

발 간 등 록 번 호

11-1051000-000112-09



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-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-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

대한민국정부

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
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



대한민국 정부
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

목 록

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1. 세 제 3

- / 3
- / 4
- / 5
- / 15
- / 17
- / 18
-

2. 금융 6

- / 6
- / 7
- 「 」 / 8
- / 9
- / 19
- / 20
- (ATM)

3. 산업(중소기업·특허) 10

- / 10
- / 11
- / 12
- / 13
- / 14

4. 환경·국토 21

- / 21
- 「 」 / 22
- / 23
- / 24
- / 25
- / 26
- / 27
- “ ” / 28

○		○	‘ ,
/ 29		/ 49	
○		○	
/ 30		/ 50	
○		○	
/ 32		/ 51	
○	/ 33	○	
○	.		/ 52
/ 34		○	.
○			/ 53
/ 35		○	
○	/ 36	(TPMS)	/ 54
○			/ 55
(http://nhf.mltm.go.kr)	/ 37	○	
○	,	○	/ 56
/ 38		○	
○		/ 57	
/ 39		○	20
○	/ 40	(1)	/ 58
○	/ 41	○	/ 59
○	.	○	
PDF		○	/ 60
/ 42		○	
○	/ 43		/ 62
○		○	
/ 44		/ 63	
○		○	.
/ 45		○	/ 64
○		/ 65	
/ 46		○	,
○		/ 66	
/ 47		○	
○	/ 48	/ 67	

○		○	
	/ 68		/ 90
○		○	/ 91
○		○	
	/ 70		/ 92
○		○	
○	/ 71		/ 93
	/ 72	○	
○			/ 94
/ 73		○	
○			/ 95
/ 74		○	
			/ 97
5. 보건복지·여성(법무)	75	○	
○			/ 99
	/ 75	○	
			/ 100
○	/ 76	○	/ 101
○		○	/ 102
	/ 77		
○ PC	/ 78	6. 고용노동	103
○		○	
/ 79			/ 103
○			/ 104
	/ 80	○ ()	
○	/ 81		/ 105
○	/ 82	○	
○	/ 83		/ 106
○	/ 84	○	
○	/ 86		/ 107
○ 3~5 全		○	
/ 87			/ 109
○		○ ()	
	/ 88		/ 110

○	/ 111	○	/ 133
○		○	/ 134
	/ 112	○	
○	/ 113		/ 135
○ 4		○	/ 136
	/ 114	○ A	/ 137
○	/ 115	○	
○			/ 138
	/ 116	○	
○	/ 117		/ 139
○	/ 118	○	
○	/ 119		/ 140
○		○	
	/ 120		/ 141
		○	
			/ 142
		○	
			/ 143
		○	/ 144
		○ 「	
			/ 145
		○	
			/ 146
		○	/ 147
		○	
			/ 148
		○ ()	
			/ 149
		○	
			/ 150
		○	
			/ 151
		○	
			/ 152

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 121

○	/ 121		
○			
	/ 122		
○	/ 123		

8. 보건·국방 124

○	/ 124		
○	/ 125		
○			
	/ 126		
○	/ 127		
○	/ 128		
○			
	/ 129		
○	/ 130		
○	/ 131		
○	/ 132		

○ ‘ , ’	○
/ 153	/ 171
○	
/ 154	10. 농식품·산림 172
○ 「 」 3	○
2 / 155	/ 172
○ ,	○ · / 173
/ 156	○ ‘ ,
9. 교육·문화(방송통신) 157	/ 174
○	○
/ 157	/ 175
○ ·	○ / 177
/ 158	○
○ 5 3-4	/ 178
(‘13.3) / 159	○
○ · ·	/ 179
/ 160	○
○ / 161	/ 180
○	○ (‘13~’16) ,
/ 162	/ 181
○	○
/ 163	/ 182
○	○ / 183
/ 164	○ / 184
○	○
/ 166	/ 185
○ TV / 167	○
○ ·	/ 186
‘107 , / 168	○ / 187
○ 700MHz	○
/ 169	· / 188
○	○
/ 170	/ 189

○ 5 .	○
/ 190	/ 195
○	○ FTA
/ 191	/ 196
○ .	○ . .
/ 192	/ 197
○ .	○ (, ,
/ 193	) / 198
○ / 194	○
	(3 → 2km) / 199

◇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◇

○ 기획재정부 203

○ 교육과학기술부 203

1. / 203
2. · / 203
3. 5 3-4 / 204
4. / 204
5. / 204
6. , / 205

○ 법무부 206

1. / 206
2. / 206
3. / 206
4. / 207

○ 국방부 207

1. / 207
2. / 207
3. / 207
4. / 208
5. / 208
6. / 208
7. / 208
8. / 209
9. / 209
10. / 209
11. / 209

12. / 210

13. A / 210

14. / 210

○ 행정안전부 210

1. / 210
2. / 211

○ 문화체육관광부 211

1. / 211
2. / 211
3. / 211

○ 농림수산식품부 213

1. / 213
2. · / 213
3. / 213
4. / 214
5. / 214
6. / 214
7. / 215
8. / 215
9. / 215

10.	/ 216	4.	/ 221
11.	/ 216	5.	
12.	,		/ 221
	/ 216		
13.	,	○ 환경부	221
	/ 216	1.	
14.			/ 221
	/ 216	2. 「	
15.	/ 217		」 / 221
16.	/ 217	3.	/ 222
17.		4	/ 222
	/ 217	5.	/ 222
18.	5 , ·	6.	/ 222
	/ 217	7.	/ 223
19.		○ 보건복지부	223
	/ 218	1.	
20.	·		/ 223
	/ 218	2.	/ 224
21.	·	3.	
	/ 218		/ 224
22.	/ 218	4. PC	/ 224
23.		5.	
	/ 219		/ 225
24. FTA		6.	/ 225
	/ 219	7.	
○ 지식경제부	219		/ 225
1.		8.	/ 227
	/ 219	9.	
2.			/ 227
	/ 220	10.	/ 227
3.		11.	/ 227
	/ 221		

12.	3~5	全	20.		/ 235
		/ 228	21.		/ 235
13.			22.		/ 235
		/ 228	23.		/ 236
○ 국토해양부	229		24.		/ 236
1.		/ 229	25.	·	·
2.		/ 230	26.		/ 236
3.		/ 230	27.		/ 236
4.		/ 230	28.		/ 237
5.		/ 231	29.		/ 237
6.	·	/ 231	30.		/ 237
7.		/ 231	31.		/ 237
8.		/ 231	32.		/ 238
9.		/ 232	33.		/ 239
10.	,	/ 232	34.		/ 239
11.		/ 232	35.	·	/ 239
12.		/ 232	36.		/ 239
13.		/ 232	37.	,	/ 240
14.	·	PDF	38.		/ 240
		/ 233	39.	·	/ 240
15.		/ 233	40.		/ 241
16.		/ 234	41.		/ 241
17.		/ 234			
18.		/ 235			
19.		/ 235			

- | | | | |
|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42. | / 241 | 10. | / 247 |
| 43. | | 11. | / 247 |
| | / 241 | 12. | |
| 44. | / 242 | | / 247 |
| 45. | | 13. | / 247 |
| | / 242 | 14. | 4 |

○ 여성가족부 243

- | | |
|----|-------|
| 1. | / 243 |
| 2. | . |
| | / 243 |
| 3. | / 243 |
| 4. | |
| | / 243 |
| 5. | |
| | / 243 |
| 6. | . |
| | / 244 |

○ 고용노동부 245

- | | |
|--------|-------|
| 1. | |
| | / 245 |
| 2. | / 245 |
| 3. () | |
| | / 245 |
| 4. | |
| | / 245 |
| 5. | |
| | / 246 |
| 6. | / 246 |
| 7. | |
| | / 246 |
| 8. | |
| | / 246 |
| 9. | / 247 |

-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/ 247 |
| 15. | / 248 |
| 16. | / 248 |
| 17. | / 248 |
| 18. | |
| | / 248 |
| 19. | . |
| | / 249 |
| 20. | |
| | ('12.11.22. , 12 |
| | ,) / 249 |
| 21. | |
| | / 249 |

○ 방송통신위원회 249

- | | | |
|----|--------|-------|
| 1. | TV | / 249 |
| 2. | | |
| | / 250 | |
| 3. | 700MHz | |
| | / 250 | |
| 4. | | / 250 |
| 5. | | / 251 |

○ 국가보훈처 251

- | | |
|----|-------|
| 1. | / 251 |
|----|-------|

○ 금융위원회 251

- | | |
|----|-------|
| 1. | / 251 |
|----|-------|

2.	/ 252	○ 방위사업청 255
3. 「	」 / 252	1.
4.	/ 252	2.
○ 관세청 252		3.
1.	/ 252	4.
○ 병무청 253		5.
1.	/ 253	6.
2.	/ 253	7. 「
3.	/ 253	」 / 257
4.	/ 253	8.
5.	/ 253	/ 258
6.	/ 254	○ 경찰청 258
7. ‘ , ’	/ 254	1.
8.	/ 254	/ 258
9. 「	」 / 254	○ 소방방재청 259
10.	/ 254	1.
11.	/ 255	2.
12.	/ 255	/ 259
		○ 산림청 260
		1.
		2.
		3.
		4.
		/ 260
		/ 261
		○ 중소기업청 261
		1.
		/ 261

2. / 261

○ 특허청 262

1.
/ 262

2.
(ATM)
/ 262

3. / 262

○ 식품의약품안전청 262

1.
/ 262

◇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◇

'12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.

- / 7
- / 12
- / 13
- / 14
- / 32
- (http://nhf.mltm.go.kr) / 37
- / 41
- / 52
- / 60
- / 91
- / 106
- / 119
- / 120
- / 138
- / 146
- / 147
- / 148

- / 151
- / 152
- ‘ ’ / 153
- / 154
- / 191
- (3 → 2km) / 199

'1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.

1월

- / 3
- / 4
- / 6
- / 9
- / 17
- / 18
- (ATM) / 19
- / 20
- / 21

○		○	
	/ 27		/ 70
○	·	○	
“	” / 28		/ 74
○		○	
	/ 33		/ 79
○	·	○	
	/ 34		/ 80
○		○	
	/ 35		/ 81
○		○	/ 82
	/ 36	○	/ 83
○	,	○	/ 86
○		○	
	/ 43		/ 88
○		○	
	/ 44		/ 90
○		○	·
	/ 45		/ 92
○		○	
	/ 47		/ 93
○		○	
	/ 48		/ 103
○		○	/ 104
	/ 50	○ ()	
○			/ 105
(TPMS)	/ 54	○	
○			/ 107
	/ 56	○	
○			/ 109
	/ 57	○	()
○			/ 110
	/ 65	○	
○	,		/ 111
	/ 66	○	
○			/ 112
	/ 67		

○	/ 113	○ ‘	,
○ 4			/ 174
	/ 114	○	
○	/ 115		/ 178
○	/ 117	○	
○ .	/ 118		/ 179
○	/ 124	○	
○	/ 125		/ 180
○	/ 128	○	
○			/ 182
/ 129		○	/ 183
○	/ 130	○	
○	/ 131		/ 185
○	/ 133	○	
○	/ 134		/ 186
○		○	/ 189
/ 135		○ 5	.
○			/ 190
/ 140		○	
○			/ 195
/ 143		○ FTA	
○	/ 150		/ 196
○ .	/ 158	2월	
○		○	
/ 163			/ 23
○ TV	/ 167	○	
○ .			/ 24
‘107	, / 168	○	/ 25
○	/ 170	○	/ 71
○		○	
/ 172			/ 121
○	. / 173	○	/ 127

○	○ 5	3-4
/ 139	('13.3) / 159	
○	○	
/ 141	/ 162	
○	/ 142	
/ 144	4월	
○ 「	○	/ 84
」 3	○ A	/ 137
2 / 155	○	
○		/ 188
/ 160	○	
○	/ 193	
/ 164		
○	5월	
/ 166	○	/ 184
○	○	
/ 171	/ 197	
○	6월	
('13~'16)	○ 「	/ 8
/ 181	○	PDF
3월	/ 42	
○	○	20
/ 10	(1)	/ 58
○	○	/ 59
/ 72	○	/ 62
/ 76	○ PC	/ 78
○ 3~5 全	○	
/ 87	/ 94	
○	○	/ 95
/ 116		
/ 123		
○ 「		
」 / 145		

○	·	·
	/ 97	
○		
	/ 99	
○	·	
	/ 100	
○	·	
	/ 126	
○		
	/ 175	
○		/ 187
○	·	
	/ 192	
○		/ 194

7월

○		
	/ 51	
○		
	/ 63	
○	·	/ 64
○		
	/ 73	
○		
	/ 77	
○		/ 100
○		/ 102
○		/ 136

8월

○		
	/ 29	
○		/ 55

9월

○	「	
	」	/ 22
○		/ 30
○	‘	’
	/ 49	
○	·	·
	/ 53	

10월

○		
	/ 75	
○	700MHz	
	/ 169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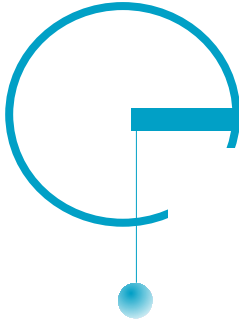
12월

○		
	/ 11	

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
'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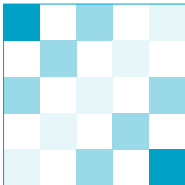
○		
	/ 5	
○		/ 15
○		/ 26
○		/ 39
○		/ 40
○		/ 46

- · / 68
- / 69
- / 122
- / 132
- ()
/ 149
- ,
/ 156
- / 157
- / 161
- / 177
- (, ,
) / 198



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

1. 세 제	3
2. 금 융	6
3. 산업(중소기업·특허)	10
4. 환경·국토	21
5. 보건복지·여성(법무)	75
6. 고용노동	103
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	121
8. 보훈·국방	124
9. 교육·문화(방송통신)	157
10. 농식품·산림	172



1. 세 제

공정과세 구현을 위한
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
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
(☎ 02-2100-3916)



- 20% 10% , 20%
- 40% .
- (10%)
- ,
- ,
-

<2013년도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>

- ▶ :
- ▶
 - ① (20%), (10%), (40%)
 - ② (10%)
 - ③
- ▶ : 2013.1. (,)

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
지방세 감면기한 연장
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
(☎ 02-2100-3926)

-
- 12 13.1.1
- (50%
→ 75%) , (50%)
-
- *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(32개, '12.5월 기준)에 대해서만
75% 적용, 기타(50개) 50% 적용 중
- (18 3) (140
) 2012 2015 3
- 2012
- 2015 3
- 13
- ※ : 2013.1.1(, '12.12.28)

보세사 자격증
취득요건중 기본교육
사전이수 의무 폐지

관세청 수출입물류과
(☎ 042-481-7906)



•

3

• 2013

3

<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 (,)

2. 금융

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

금융위원회 보험과
(☎ 02-2156-9831)



*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: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%를 보장 (기존 90%, 100%)하는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
- '13.1.1.부터,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비해 보장률 10%포인트 상승(80%→90%)하고, 과잉진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-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비해 보장률 10%포인트 상승(80%→90%)하고, 과잉진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-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비해 보장률 10%포인트 상승(80%→90%)하고, 과잉진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
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실손의료보험 종합 개선대책
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보험업감독규정 개정

<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>

- ▶ : 2013.1.1.부터,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비해 보장률 10%포인트 상승(80%→90%)하고, 과잉진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 - ▶
 - ① ()
 - ② ()
 - ③ ()
 - ▶ : 2013.1.1.부터,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비해 보장률 10%포인트 상승(80%→90%)하고, 과잉진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- ※ 단,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'13.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

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
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
(☎ 02-2156-9856)

- .
- .
 - (1~6) (20 , '13.7 19) . ()
 - , (7) , (i) , (-) 50
 - (ii) (.) 30
- ()
- ①
- ② 6
- .

☞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

<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>

- ▶ :
- ▶
 - ① (1~6)
 - ②
- ▶ : 2012.10.15. ()

「대부중개수수료
상한제」 시행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
(☎ 02-2156-9475)



5%

•

,

•

「

」

•

-

,

(

)

'13.

※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(다만, 여신금융 기관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.)

<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>

▶

:

▶

①

5%

▶

: 2013.6. 12

**전자단기사채등의
발행 및 유통에
관한 법률 시행**
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
(☎ 02-2156-9874)

- 「
15
·
(
,
)
「
·
(CP)
,
,
·
① CP
- CP
·
- CP
② CP
- 1
-
③
-

3. 산업(중소기업·특허)

최근 산업구조의
변화를 반영한 산업
단지제도 개선
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
(☎ 02-2110-5302)

- . , .
- , 11 , '12 12 ,
- , '13 3 2

<2013년도 산업단지제도 개선>

▶ : ,

▶

① (2012.12)

② (2013.3)

**유전자변형미생물
및 생산공정이용시설
안전관리 제도화**

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
(☎ 02-2110-5661)



「
(LMO)」

* 국내 C기업에서 “당”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개발(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), 식약청에 위해 **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,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**를 완료하고, 생산승인한 바 있음('11.6월)

• '13 12 LMO 22 3 22 4

* LMO법 제22조의3(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: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, LMO법 제22조의4(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) :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



(7 2),



(22),



.(26 2)

<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>

▶ :



①

② ()



: 2013.12.

**강원랜드의 폐광지역
개발기금 납부비율
상향조정**
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
(☎ 02-2110-5495)

■ ()
100 20 100
25
.
• 100 20
100 25 .

<201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>

- ▶ :
- ▶
 - ① (20%→ 25%)
- ▶ : 2012.11

**외국 리콜제품에 대한
사업자보고 의무화**

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
(☎ 02-509-7238)



•

*

* 리콜이행 실적 : 미국 ('08) 564건, ('09) 466건, ('10) 402건
일본 ('08) 106건, ('09) 94건, ('10) 103건

•

<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>

▶ :

▶

①

②

▶ : 2012.8.24.

**우정서비스의 업무
전문성 제고를 위해
업무위탁 확대**

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
(☎ 02-2195-1115)



• “ ”

*

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
관리단

•

**** 업무위탁 확대 내용**

-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·회계
등 다수
- 세부내용 : 『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』 제14조(업무의
위탁) 참고

☞ (관련법령) www.law.go.kr에서 “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” 검색
(제14조)

<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위탁 확대>

▶ :

▶

① * (**)

* 공익사업운영, 우체국보험 계약관리,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, 결산·회계
지원 등

** 한국우편사업진흥원, 우체국금융개발원, 우체국물류지원단, 우체국시설관리단

▶ : 2012.11.6.

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
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
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
(☎ 042-481-4453)



75%

- ‘13 1

*산학연 첫걸음기술개발 : 국가 R&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지역내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,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(기존 지역사업을 개편)

**산학연 도약기술개발 : 성장정체 또는 혁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도약·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개발 비용을 지원(기존 전국, 국제, 중점,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합 개편)



, ‘13 1



• (3) , , .

• , 1 ‘13
1 ~ 9 .
.

**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
소규모 협동조합에
협업사업 지원**
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
(☎ 042-481-4491)



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

• () , 2013 1

.

-

,

.

<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>

- ▶ :
- ▶
- ① : , , , , ,
- ② : , , , , ,
10~20 ()
- ③ : (: 1)
(80%, 20%)
- ④ : → . → →
→ → →
- ▶ : 2013.1.

※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5195)



-

•

三

-

<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>

3	30%
---	-----

,

**특허수수료 자동납부
신청 금융기관 확대
및 자동화기기(ATM)
납부 특허수수료 확대**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5195)



- ‘ () ‘
- ,
- , , ,

※ (A type)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설정등록료, 연차등록료, 심판청구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
(B type) 4년차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자동납부하는 경우

- ’13.1.1.



(ATM)

- (ATM)
- ’13.1.1.
- (ATM)

**<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 및
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>**

- ▶ :
- ▶
 - ①
 - ② (ATM)
- ▶ : 2013.1.1.

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
(☎ 042-481-8238)

* 특허청인증서와 동일하게 PCT 인증서도 2013년 1월부터 발급이 중단

- , 2013

<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증체계 개선>

- :
►
① ('13
)
②
► : 2013.1.1.

4. 환경 · 국토

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
(☎ 02-2110-6822)



- 1,4-
3 ,
(TOC)
- ,

<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>

- ▶ :
- ▶
 - ① 3 (17 → 20)
- 1,4- ,
 - ② (TOC)
- .
- ▶ : 2013.1.

「어린이용품 환경
유해인자 사용제한
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

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
(☎ 02-2110-6960)

■ 2013 9 27 「

」

.

- 4 (DNOP, DINP, TBT,)

.(12.9.27)

※ DNOP(Di-n-Octylphthalate, 다이-n-옥틸 프탈레이트), DINP(Di-isononylphthalate,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), TBT(Tributyltin compounds, 트라이뷰틸 주석), 노닐페놀(Nonylphenol)

- DNOP, DINP

*

* 전이량 :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(빠는 행위), 피부,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

- TBT, 「

*

* 취급제한물질 :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, 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(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)

•

•

<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>

▶ :

▶

① 4 (DNOP, DINP, TBT,)

- DNOP, DINP : (,) , TBT, :

▶ : 2013.9.27.

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
위한 자동차 배출가스
원격측정 시행
환경부 교통환경과
(☎ 02-2110-6859)



- ()
(,)

- 2013 2

2014

- , (. .)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
시행규칙 입법예고

<수시점검 개선 주요내용>

- ▶ : .
,
- ▶
① ()
- : , ()
- : , () +
()
- ▶ : 2013.2.2.

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
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
정비사업으로 통합

환경부 교통환경과
☎ 02-2110-6859)

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
시행규칙 입법예고

<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주요내용>

- ▶ :
▶
① 2
▶ : 2013.2.2.

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

환경부 교통환경과
(☎ 02-2110-6809)



•

30%

2013 2

※ 이동오염원 총 배출량의 NOx 34%, PM 43%가 비도로이동오염원
(건설기계, 농업기계 등)에서 배출('09년 CAPSS 자료)

- 2013 , 2 Tier-3
, 2015 Tier-4

•

2013 2

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자료>농업기계 배출가스, 2013년 2월부터
단계적 규제 시행

<2013년도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도입>

▶ :

▶

① , Tier-3 ()

② . (:

)

▶ : 2013.2.

**미세먼지 예보를 통한
국민 건강 보호**

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
(☎ 02-2110-6778)

■ 2013

• 8월 1일부터, 2013

- 2013년 12월 31일까지, 2014

• (PM10) (PM2.5)

※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(대기오염 예측 발표) :

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·재산이나 동식물의
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
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.

<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>

- ▶ : ①
- ▶ ② , (,)
- ▶ : 2013 ()
- ▶ : 7 2(.)

**자원순화사회 구축을
위한 음폐수 해양배출
금지**

환경부 폐자원관리과
(☎ 02-2110-6943)

■ 2013 1 1
()

• 2006

• 2011 12

, 1

2013 1

■

<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>

▶ : ,

▶
① ()

▶ : 2013.1.1.

감정평가의 투명성·
객관성 제고를 위한
“감정평가기준” 명확화
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
(☎044-201-3424)

■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■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■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■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①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 ②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

<2013년도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추진 내용>

▶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▶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①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②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③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▶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 「감정평가법」 제13조(감정평가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)에 따라 「감정평가기준」(이하 “기준”)은 대통령령으로 제정·개정·폐지한다.

* 감정평가 실무기준(안)은 제정추진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('13년초 시행예정)

**부동산종합공부 열람
및 발급 서비스 전국
시행**

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
(☎ 044-201-3480)

2013

233

• ‘ ,

「 」

•

• , , , , ,

•

9

•

• ,

‘ , ‘ , ‘ , ‘ , ‘

2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

<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>

▶ :

▶

①

②

③

► : 2013.8.()

※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

**국민이 참여하는 지적
재조사사업 공개
시스템 도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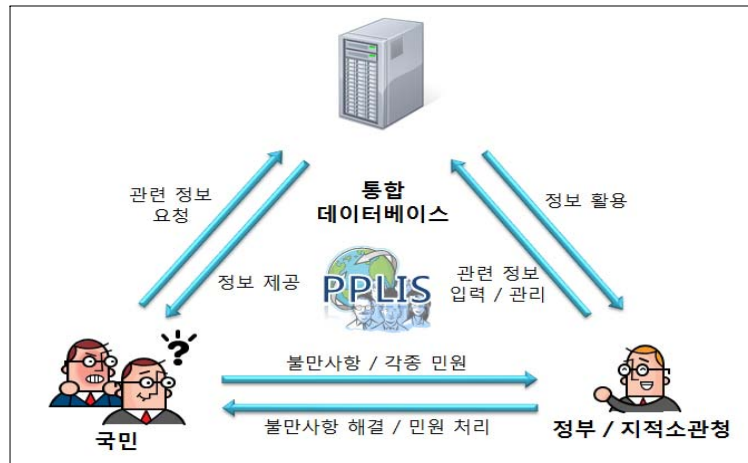
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
(☎ 044-201-4651)



, 2013

(PPLIS)

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



<PPLIS 운영계획 모델>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<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>

- ▶ :
- ▶
 - ①
 - ②
- ▶ : 2013.9.()

국민주택기금 대출
및 조성금리 인하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0.5%p
0.5%p ' 12.12.21 .
· .
(4.0%),
(4.2%), . (5.2%)
0.5%p *

구 분		변경전	변경후	비 고
		4.0%	3.7%	< > - (1.0→0.5%), . (0.5→0.2%) ()
		5.2%	4.3%	
		4.2%	3.8%	
		5.0 ~ 6.0%	3.8 ~ 4.0%	4.8%(60㎡)
		3.0 ~ 4.0%	2.7 ~ 3.7%	2% ('13)
		3.0%	2.7%	-

· (' ,)
0.5%p .

구 분	가입기간 1년미만	1년이상 2년미만	2년이상
	2.5%	3.5%	4.5%
	2.0%	3.0%	4.0%

*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개정(12.21) *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

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<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>

▶ :

▶

① . (4.0%), (4.2%), . (5.2%)
0.5%p

② () 0.5%p

▶ : 2012.12.21.

**국민주택기금 대출
소득요건 조정**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

2013 1

〈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〉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	3 * 3 5	() 4 * 4 5
	3 * 4	() 4 * 5
	5	() 5 5

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<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>

- ▶ :
- ▶
- ①
- ▶ : 2013.1.2

**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
가점제 무주택 인정
기준 완화**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■ 2013 1

• *

• **

* 가점항목(84점) : 무주택기간(32점), 부양가족수(35점), 입주자저축 가입
기간(17점)

** 무주택 인정기준 : 전용60㎡이하 +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+ 10년이상 보유

• ‘7’

• , ‘10’

■ 2007

•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소형·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>

▶ :

▶

①

• () 5 →7 , () 10
→

• () 60㎡ →

▶ : 2013.1.(,)

**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
대한 제제요건 완화**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■ 2013 1

- *
- **

* 착오기재 사례: 청약순위, 주택소유여부,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, 재당첨제한 등

■

* 당첨은 취소하되, 당첨사실을 삭제하고,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, 다만, 일정기간 청약제한(당첨일로부터 1년(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)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제요건 완화>

- ▶ :
- ▶
 - ①
 - ②
- ▶ : 2013.1. (,)

**외국인 주택단지에
입주할 수 있는
외국인 범위 확대**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- 「주택법」 제42조제1항제2호(주택단지 입주허가 대상 외국인 범위)에
)
- 「주택법」 제42조제1항제2호(주택단지 입주허가 대상 외국인 범위)에
,
- 「주택법」 제42조제1항제2호(주택단지 입주허가 대상 외국인 범위)에
()

- 「주택법」 제42조제1항제2호(주택단지 입주허가 대상 외국인 범위)에
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<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>

- ▶ :
- ▶
 - ① ,
- ▶ : 2013.1. (,)

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
(<http://nhf.mltm.go.kr>)
서비스 개시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
(☎ 044-201-3338)

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(<http://nhf.mltm.go.kr>)」
 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 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 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

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

- ▶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- ▶ ①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을 개시한다.
- ▶ : 2012.12. (<http://nhf.mltm.go.kr>)

**아파트 관리, 입주민
자율 크게 확대**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9)

- **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**
 - ▶ **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**
 - ① 500 ()
 - ② (, 2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

<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>

- ▶ : ,
- ▶
 - ① 500 ()
 - ② (, 2)
- ▶ : 2013.1.(,)

공동주택 주민공동 시설 총량제 도입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7)



•

,

- ,

() ,

,

* 예 : 주민운동시설(실외)은 인근 동(棟)에서 소음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, 작은 도서관은 방치되거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

-

,

.

-

()

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 기준 전면개편

<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>

▶ :

▶

① ,

▶ : 2013 ()

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

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
(☎ 044-201-3367)



•

,

10

-

,

, 1

(

,

)

•

,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
기준 전면개편

<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 ()

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

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

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
(☎ 044-201-3392, 3386)

- ()
- 2006 9 25 ('09.7.1)
1
- 3
- ,
- 2014 12 31
- ()
- (, 4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

<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>

- ▶ :
- ,
- ,
- ▶
- ① 2014 12 31
- (() 4)
- ▶ : 2012.12.18.

지도·영상이 중첩된
PDF 방식의 지도
제작 및 배포

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
(☎ 031-210-2720)

- PC (PDF) .
- (CAD) ,
-
- ,
- /
- 2012 PDF (1/5,000) , 2013
- (S/W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등산로·자전거길 “나만의 맞춤형지도” 만든다.

<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>

- ▶ :
- ▶
- ① PDF , 2013 (1/5,000)
- ② (S/W)
- ▶ : 2013.6.

**감리전문회사의 입찰
부담 완화 및 선정
기준의 공정성 제고**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
(☎ 044-201-3581)



- , (SOQ·TP)
- , (TP)
- , (SOQ)
- (10) 20
- ,
- , PQ
- (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

<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감리전문회사 PQ기준 주요개정>

- ▶ : PQ ,
- ▶
 - ① ,
 - ② PQ
 - (2 →4)
- ▶ : 2013.1.(), 2013.4.(PQ)

■

**감리원 복지향상 및
합리적인 건설공사
감리대가기준 정립**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
(☎ 044-201-3581)

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☎ 044-201-3581)

22)

(1

70%

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

<건설공사 감리대가 일부개정 주요내용>

▶ :

▶

①

②

▶ : 2013.1.

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
(☎ 044-201-3577)



2013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

<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개정>

▶ :

▶

①

②

③

▶ : 2013.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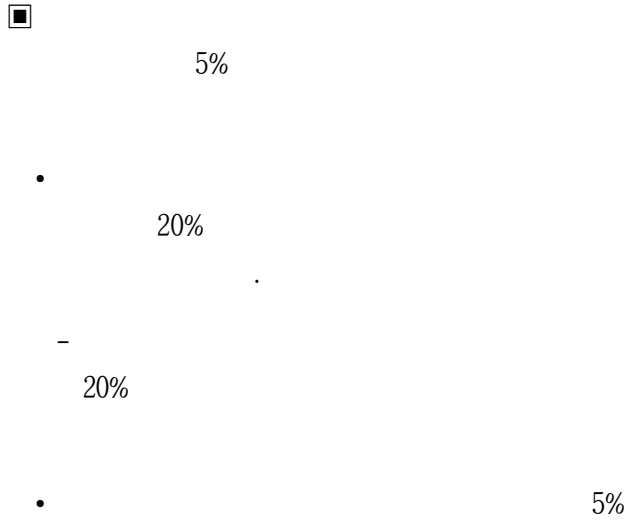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
(☎ 044-201-3689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/국토해양뉴스/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 기관 설립 허용

► : 2013

**기업도시 개발이익
감소시 재투자비용
사후조정 기준 개선**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
(☎ 044-201-369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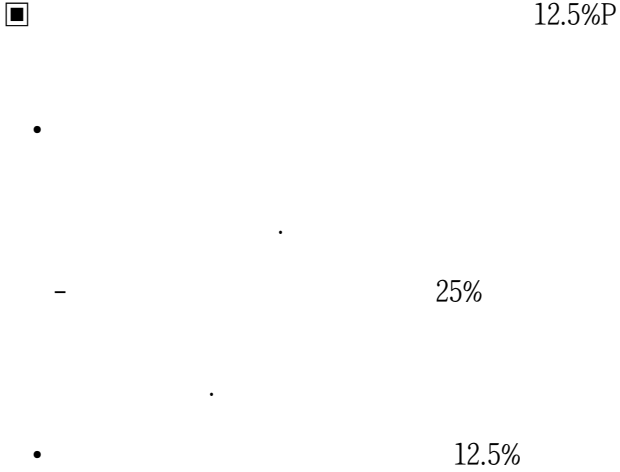


☞ 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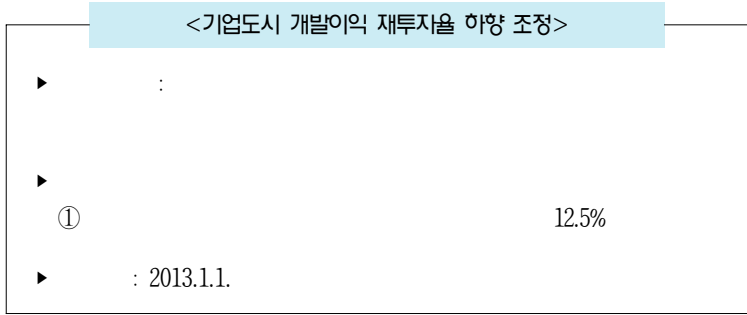
**<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
사후조정 기준 개선>**

- ▶ : 20%
- ▶ ① 20%
- ▶ 5%
- ▶ : 2013.1.1.

**기업도시 개발이익
재투자율 하향 조정**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
(☎ 044-201-3691)



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



**새만금사업을 총괄할
'새만금개발청' 신설**

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
(☎ 044-201-3696)



, .

* 새만금사업은 '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(Master Plan)에 따라 30%를 농지로, 70%를 산업·관광·과학연구·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

- 6 (.)



『 』 2013 9 ‘ ,

• 6

• . . . ,

- ,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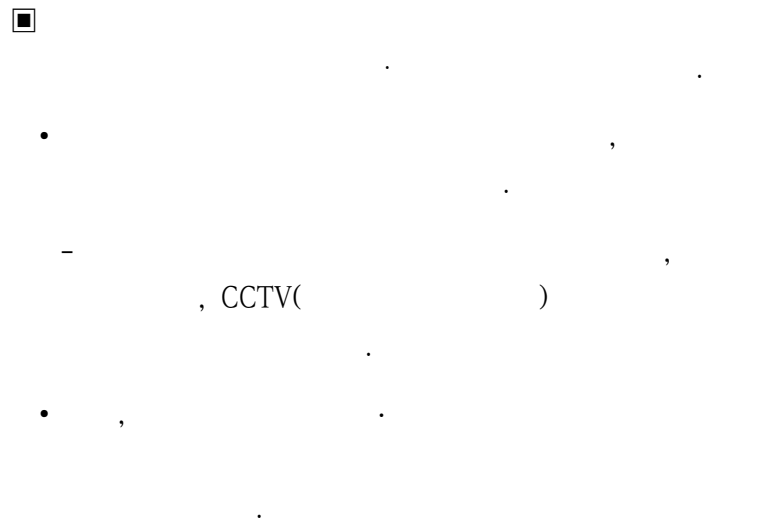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<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>

- ▶ : , , 『 』 172 ('12.11.22)
- ▶ ① , ()
- ②
- ▶ 시행일 : 2013.9.11.

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
(☎ 044-201-3751)

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도시공원법시행규칙

<도시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>

▶ :

▶

① ,

② .

▶ : 2013.1

**민간자본을 이용한
도시공원조성 활성화**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
(☎ 044-201-3751)

■ 10 m²

• (, 80%)

•

※ (민간공원제도) 10만m²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80%이상을 기부
체납하는 경우 20%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허용(도시공원법 제21조의2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도시공원법시행규칙

<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내용>

▶ : 10 m²

▶

•

☞ (현행)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 → (개정) 기존 요건에
'공원조성비 4/5 예치' 요건 추가

▶ : 2013.7

**반품으로 말소 등록된
차량을 판매하는 경우
반품차량임을 구매
자에게 고지의무 신설**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
(☎ 044-201-3843)



- 2012 12 18

100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관리법

<반품차량 판매시 고지의무 신설>

▶ :

▶
①

* 고지의무자 : 자동차 제작·판매자 등

② 100

▶ : 2012.12.18.

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
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
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
통지의무 신설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
(☎ 044-201-3844)



·
()

,

·

·

, ,

,

- 2013 9

, 6 ()

·

·

·

,

·

·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관리법

<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>

▶ :

▶

①

·

*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▶ : 2013.9.1.

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
경고장치(TPMS) 설치
의무화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
(☎ 044-201-3851)

- , (TPMS)
- (TPMS)
- , 2013
- 3.5
- (TPMS)
-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>	
▶ :	
▶	
①	3.5 , ,
▶ :	2013.1.

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
(☎ 044-201-3851)



•

2

,

4.5

3.5

,

•

.

-

4.5

→

(

'13.8.16)

* 최고속도제한장치 : 승합차(110km/h), 화물자동차(90km/h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<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.8.16.

**보행자 보호를 위한
자동차 안전기준 강화**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
(☎ 044-201-3851)

■ () •	40% ,
	, 2013 1 • , ,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	<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> ▶ : ▶ ① ▶ : 2013.1.1.
--	--

**철도운전면허시험
응시수수료 감면제도
도입**

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
(☎ 044-201-4602)



•

, 2013 1

「

」

「

」

50%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

<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>

▶ :

▶

①

-

50%

▶ : 2013.1.1

항만재개발 사업시행
자에게 20년(1회 연장)
까지 국유지 임대
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
(☎ 044-201-4177)

■ 20 (1)

•

(5)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

<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임대 특례 마련 내용>

▶ :

▶

① 20 (1)

②

▶ : 2013.6.

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

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
(☎ 044-201-4145)



20

•

•

,

•

•

,

20

,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

<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개선 내용>

▶ :

▶

①

②

20

▶ : 2013.6.

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
기준 신고제도 시행

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
(☎ 044-201-4003)

■

국제물류주선업 :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“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
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”으로
정의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‘포워딩(forwarding)’ 업이라 부름

- 3
- 2 6
2013 6 30
- ,
(1) (200)
- 30 60 ,
15 30
- 6 1 ,
- , (Apostille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

<국제물류추진업 등록 및 신고제도 개편>

▶ :

▶

① (3)

② (→)

③ (30 → 60)

④ , , , (15 → 30)

⑤ (6 → 1)

⑥

⑦ (Apostille)

▶ : 2012.12.3. ('12.12.3)

**물류단지 개발절차
명확화 및 규제완화
등 제도개선**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07)

■ ‘13 . 「 .
」
「 」
•
「
」 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주요 사항>

▶

①

②

③

④

⑤

▶

: 2013.6.

*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('12.10)

복합물류터미널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07)



‘13

(

)

※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2.12월 개정안 국회제출)

• ,

,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주요 사항>

▶

•

()

-

,

▶

: 2013.7. ()

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과징금·벌금 병과
제도 개선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07)

- •

()

,

• ‘13

※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12.12월 개정안 국회제출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과징금·벌금 병과제도 개선 주요 사항>

▶

•

,

- 1

3

- 1

3

•

▶ : 2013.7.()

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**물류창고업등록관리
대국민 민원 서비스
실시**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
(☎ 044-201-4011)

■ 「
1

2013

• (234)

* '12.12월현재 물류창고업 등록현황(3,612건) : 수도권 1,570건, 지방 2,042건

•

'13 1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서비스 실시>

▶ :

▶

① (2012 11)

▶ : 2013.1.

*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('12.8.4.)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('12.11)하고,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'13년 1월부터 정상 운영

국도해양부 물류산업과
(☎ 044-201-4018)

▶ :
▶
① ,
▶ : 2013.1.1.

**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
허가기준 변경 시행**

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
(☎ 044-201-4022)

■ 「 」 (‘13.1.1)

- 20 , 10
- “ ” ,
- 500
- “ ”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

<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>

- ▶ :
- ▶
- ① “ ” ,
- “ ”
- ▶ : 2013.1.1.

**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
따라 헬기장 활주로
길이·폭을 변경**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49)

-  * 1.2
15m
*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항공기의
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을 말함
- 
- 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

<헬기장 활주로 크기 변경>	
▶ 	:
▶ 	
①	(A~D)
②	1.2
15m	
▶	: 2013.1. ()

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49)



• ,

•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

<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>

▶ : ICAO

▶

①

▶ : 2013.1.()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50)



•

1

•

해

入

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
(☎ 044-201-4355)



(’12.7.27)

•



* “공항운영증명”은 공항운영자가 인력, 시설, 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

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

<공항운영자 신설>

▶ :

▶

① 「 , 「 」

②

▶ : 2013.2. ()

**여수세계박람회 사후
활용 참여기업에 대한
인센티브 제공**

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
(☎ 044-201-4377)



• 2012 9 5

- 2012 12

3 100%, 2 50%

- 2013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

<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>

▶ :

▶

① (, 3
100%, 2 50%)

②

▶

① : 2013.1.

② : 2013.3.

**시화호 특별관리해역
연안오염 총량관리
시행**

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
(☎ 044-201-4422)



- 2017 (COD) 3.8
→ 3.3mg/L, (TP) 0.074→0.065mg/L
COD 7,241.3kg/ , TP
193.00kg/
* '10년도 COD 배출량은 7,761.7kg/일, TP는 203.11kg/일이며, 총량관리
미시행시 '17년도 COD 배출량은 8,703.5kg/일, TP는 251.54kg/일임
- ,
COD 1,462.2kg/ , TP
58.54kg/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시화호 총량관리 시행

<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>

- ▶ :
 - ▶
 - ① : , / '13.7.1~
'17.12.31
 - ② : (. . .)
482.94km2
 - ③ : (3.3mg/L), (0.065mg/L)
 - ④ : (7,241.3kg/), (193.00kg/)
 - ⑤ : (1,462.2kg/), (58.54kg/)
 - ▶ : 2013.7. ()
- ※ 2012년 12월까지 「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」 수립 예정

5. 보건복지 · 여성(법무)

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
(☎ 02-2023-7418, 8756)



- (), (TS-1) 13
5%

- , , ,
, 2013 10



- , 2012 75
2013 7 50%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

<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>

- ▶ : 「 」
- ▶
 - ① () (50% → 5%)
 - ② (TS-1) (100% → 5%)
 - ③ (→)
 - ④ (→)

**필수예방접종 국가
지원 항목 확대**

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
(☎ 043-719-7369)

- **1. 65세 이상 노인 대상 Hib(b형 폐렴구균) 예방접종**
 • 기존 : 65세 이상 노인 (2013. 3. 1. ~ 2013. 5. 31.)
 • 확대 : 65세 이상 노인 (2013. 5. 1. ~ 2013. 5. 31.)

☞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(<http://nip.cdc.go.kr>)

<2013년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>

- ▶ **1. 65세 이상 노인 대상 Hib(b형 폐렴구균) 예방접종**
 • 기존 : 65세 이상 노인 (2013. 3. 1. ~ 2013. 5. 31.)
 • 확대 : 65세 이상 노인 (2013. 5. 1. ~ 2013. 5. 31.)
- ▶ **2. 65세 이상 노인 대상 Hib(b형 폐렴구균) 예방접종**
 ① Hib(b형 폐렴구균) (2013. 5. 1. ~ 2013. 5. 31.)
 ※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(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)
 ② 65세 이상 노인 (2013. 5. 1. ~ 2013. 5. 31.)
- ▶ **3. 2013. 3. 1. (65세 이상 노인) 5명**

**의료급여 희귀난치성
질환 추가 및 건강
생활유지비 추가 지원**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
(☎ 02-2023-8257)



144 , 107 2013

•

5 ,

- 2013 3

19

•

5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의료급여제도 개선으로 촘촘한
의료안전망 구축

<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>

▶ :

▶

① (107 →144)

②

(5 /)

▶ : 2013.7 ()

**PC방에서 흡연 전면
금지**
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
(☎ 02-2023-7848)



- ▶ ‘13 6 PC .
- PC , 13 6 PC
- *
- *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 ‘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

<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>

- ▶ :
- ▶ ① , , PC
- ▶ : 2013 6 8

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
(☎ 02-2023-7785)



- 100 13 1 1 100 1 150m² (45) (8) (' 13 1 31) , ' 13 4 30 (5) () () .

☞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음식점 메뉴판,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

<음식점,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>

- ▶ :
▶
① 100
② (: 150m²
)
▶ : 2013 1 (' 13 4 30
)

생활이 어려운
중증장애인에 대한
장애인연금 지원
확대 등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
(02-2023-8672.8654 ☎)

- 2013 ()
·) 2012 55.1 (88.1) 58
(92.8) 3 .
·
2012 43 2013 45 .
■ , 2013 1

- 2 .

<

>

- ▶ :
▶
① : ' 12 55.1 (88.1)
→ ' 13 58 (92.8)
② : ' 12 43 →
' 13 45
③ : ' 12 2
* 기초 : (18~64세) 6만원→8만원 / (65세 이상) 15만원→17만원
* 차상위: 5만원→7만원
* 차상위 초과 : (18~64세) 0만원→2만원 / (65세 이상) 2만원→4만원
▶ : 2013 1 1

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및 급여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
(☎ 02-2023-8204)



2

1
, 2013 2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
및 급여 확대

<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개정사항>

- ▶ : 2
- ▶
 - ① (1 → 2)
 - ②
 - () : 35~86 → 361~886
 - () : 35~52 → 361~886
 - : 83~664 → 86~684
 - * 최종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·출산·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
 - ③
 - / : 8,300 /9,300 → 8,550 /10,260
 - ④
 - / : 4,000 / : 6,000 /
- ▶ : 2013.1. ()

재외동포 및 외국인
장애인등록 시행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
(☎ 02-2023-8184)



- 32
- 2013 1 27

<2013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내용>

- ▶ :
 - * 외국인도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 개선권고 (인권위, '08.7.15)
 - * 외국인 지위·차별 개선 등 외국인 장애인 차별시정 과제 추진(국무조정실, '07.12.5)
 - * 20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(법무부)
- ▶ :
 - ①
 - ②
 - 6
 - 31
 - 10 1
 - 2 3
- *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
- ▶ : 2013.1.27.

**장애아동 재활치료
서비스 확대**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
(☎ 02-2023-8667)

- 3 1
 - 2013 4 .
 - ‘ 100% ’
 - , 2013 150% 9
 - 100% 150%
 - 18

<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>

- ▶ :
- ▶
 - ① (100% → 150%)
 - ② (31→40)
- ▶ : 2013.1. (,)

▶ . (21 , 14)

- .

- .

(7)

· , , , ,
 , , , ,
 , , , ,
 , , ,

▶ : 2013.4.11.

**체외수정 시술비
지원 확대**
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
(☎ 02-2023-8483)

■ 2013년 4월 30일까지
3회까지 지원 (180만원)
• 2013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
180만원, 4월 1일부터 100만원, 4월 1일부터 180만원
2013년 4월 1일부터 180만원
- 4월 30일까지 (300만원)

<2013년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>

- ▶ : ① (4월 100만원 → 180만원)
*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
* 인공수정은 '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
- ▶ : 2013.1.

**만 3~5세 어린이
수 계층 누리과정
확대 적용**

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
(☎ 02-2023-8926)



3~5

- 2012 3 '5 ' 2013 3
3~5
- 3-5 ' 3~5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정책소개>영유아보육>3-5세 연령별 누리과정

<만 3~5세 어린이 수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>

- ▶ : “ ”
- ▶
 - ① ()
 - ② (70% → 수)
※ 22만원('13년) → 24만원('14년) → 27만원('15년) → 30만원('16년)
- ▶ : 2013.3.

국민기초생활보장
수급자의 부양의무자
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(☎ 02-2023-8128)



- 1
3300 () 2 2800

* 대도시 133백만원→ 228백만원, 중소도시 108.5→136백만원

- ,
(4.17→1.04%)



- 4 1,495,550 1,546,399
3.4% 4
1,224,457 1,266,089

- 50 75

- (30)
1 9.5% 163,147



- ()

- ,
30%

<2013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사항>

- ▶ :
- ▶
 - ①
 - ② (4.17%/
 - 1.04%/)
 - ③ 3.4%
 - ④ (50 →75)
 - ⑤
 - ⑥ (.)
 - ⑦ 30%
- ▶ : 2013.1. (,)

건강기능식품 부작용
추정사례 보고기관
통합 운영
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
(☎ 043-719-2257)

■ 2013

• ()
() () ()
) , 2013 1

- 1577-2488

• *

,	,	,	,	,	,	,	,
,	,	,	,	,	,	,	,
,	,	,	,	,	,	,	,

* 부작용 추정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

국립중앙청소년디딤 센터 운영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
(☎ 02-2075-8613, 8617)

- . “ ”
- 2013 .
- , , ,
- (ADHD) .
- (9 ~18) .
- (3 , 1), , , , (2 , 1).
- 30 (1) , .
- , , , , .

*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연락처 :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번지, 031)333-1900

☞ (참고)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(www.nyhc.or.kr)

<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>

- ▶ : .
- ▶
 - ① : , , ADHD .
 - 9 ~18
 - ② : , , ,
 - ③ : 30 (),
 - ④ : , , , ,
- ▶ : 2012.12.17.

**청소년지도사·청소년
상담사 보수교육
의무화**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
(☎ 02-2075-8614)

■ 「**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무화**」
2013. 1. 1.부터 시행합니다.
• 기존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
2012. 2. 20.부터 시행된 「**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
보수교육의무화**」에 따라
• 기존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
8시간으로 실시하였으나,
• 기존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
100시간으로 실시하였으나,
• 기존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청소년기본법'

<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>	
▶	: 2013. 1. 1.부터 시행합니다.
▶	
①	: 2013. 2. 20.부터 시행된 「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무화 」에 따라 2013. 2. 20.부터 시행된 「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무화 」에 따라 8시간으로 실시하였으나, ▶ : 2013. 1. 1.

**저소득 한부모가족
아동양육비 단가 인상**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
(☎ 02-2075-8713)

- 「 」 12
2013 1 1 7
- 2005
8 5 ,
- 2013 12
5 7

〈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원단가 확대 추이〉

구 분	'05년	'08년	'09년	'10년	'13년
	6	8	10	12	12
	5	5	5	5	7

<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>

- ▶ :
- ▶ ① 12
5 7
- ▶ : 2013.1.1.

**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
교육 의무기관 확대**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
(☎ 02-2075-8766)

■ 「**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」 2013. 6. 19.

- 「**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」 제24조제1항제2호(이하 "제24조제1항제2호"라 함)는 "교육기관"으로서 "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"를 규정하고 있는바, 2013. 6. 19. 제정된 「**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」 개정법령(이하 "개정법령"라 함)에 따라 "교육기관"으로서 "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" 외에 "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"가 추가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<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>

<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>

- ▶ :
 - ▶ ① * (종전) 어린이집, 유치원, 각급학교 → (확대)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추가
 - ▶ ②
- ▶ : 2013.6.19

**성폭력 피해자 및
가족에 대한 지원
확대**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
(☎ 02-2075-8768)

■ 2012 10 25

• , 500

• , 19
()

■

• , 2 , 2013 6 19

■

• , 2013 6 19

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·해명>보도자료> '성폭력피해자 가족
의료비 지원 확대'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'

<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자원 확대>

▶ :

▶

① (2012.10.25)

- 500

-

* (현행)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 → (확대) 모든 피해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 및 자매, 배우자 및 보호자

② (2013.6.19)

'12년	'13년 6월~
· : 6 *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 *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만 18세까지 연장 가능	① : 6 (1 6 1) ② : 2 () ③ () : 19 (2 1 1) ④ : 2 (2 1) ⑤ : ④

③ (2013.6.19)

- : , , ,

- : . .

조항	내용	현행	개정안
7 (아동·청소년 강간·강제추행 등)		5	5
		3	5
		1 5 ~2	2 1 ~3
11 (아동·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· 배포 등)		5	5
	.	7	10
	.	3 2	7 5
		2	1 2
		1 10	3
13 (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)	.	5 3	1 ~10 2 ~5



- 「www.sexoffender.go.kr」
()
() .

* 현행 : 성명, 나이, 주소(읍·면·동), 신체정보, 사진, 성범죄 요지

- (.
)
(), , ,
.

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료>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
국회통과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'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'

<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·관리 강화>

- ▶ : .
- ▶
 - ① (,
)
 - ② (5 → 5 ,
3 → 5 , .
. . 5 → 5)
 - ③ (13
→ 13 ,)
 - ④ (.
)
 - ⑤ .
 - ⑥
- () ‘ . . ’→()
‘ . .
- , (PC),
,
 - ⑦ (, .
)
 - ⑧ (,
)
- ▶ : 2013.6. (, 2012.12.)

**성폭력범죄 피해자를
위한 피해자 국선
변호사 제도 시행**

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
(☎ 02-2110-3648)

■ 2013

()

• 19

• 2013 6

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 도우미!! 법률조력인

<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>

▶ :

▶

① ,

② , ,

③ ,

④

▶ : 2013.6.19(「 」)

**성폭력 피해 아동·
장애인 위한 진술
조력인 제도 도입**

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
(☎ 02-2110-3852)



- , .
- 2013 7
- - 2014 1
- 2

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관련뉴스> ‘진술조력인 제도 도입!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!’

<진술조력인 제도>

- ▶ :
- ▶
 - ①
 - ②
 - ③
- ▶ : 2013.6.19
 - ※ 2012년 11월 현재 예산 심의중으로 시행 시기 변경 가능
 - ※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배치 및 활동 시작

자녀의 복리를 위한 친권제도의 개선

법무부 법무심의관실
(☎ 02-2110-3164)



‘ , ’

•

※ 가족관계등록예규, 판례(94다1302)에 따르면, 단독친권자가 사망한
경우에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됨



2013 7

•

, , , ,



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

<2013년 친권제도의 개선>

▶ :

▶ :

①

②

③

▶ : 2013.7.1.

**아동의 복리를 위한
입양제도의 개선**
법무부 법무심의관실
(☎ 02-2110-3164)



•

- 2013 7 1

,

,

,

,

•

,



•

15

(19)

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

<2013년 개정된 입양제도>

▶ :

▶

- ①
- ②
- ③

▶ : 2013.7.1.

6. 고용노동

유망창업기업에 대한
고용창출지원금 지원
대상 업종 확대

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
(☎ 02-6902-8474)

■

• ‘2013년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확대’

10 (1 720)

- 2013 * 17 (U)

* 신성장동력 산업

녹색기술산업	①신·재생에너지, ②탄소저감 에너지, ③고도 물처리, ④LED 응용, ⑤그린수송시스템, ⑥첨단 그린도시
첨단융합산업	⑦방송통신융합산업, ⑧IT융합시스템, ⑨로봇 응용, ⑩신소재·나노 융합, ⑪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, ⑫고부가 식품산업
고부가서비스산업	⑬콘텐츠·소프트웨어 ⑭글로벌 헬스케어 ⑮글로벌 교육 서비스 ⑯녹색금융 ⑰MICE·융합관광

** 국내복귀(U턴) 기업: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,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,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

<고용창출지원사업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>

▶ :

▶

① 17 10 (2)

② (U)

③ : 1 1 720 (2 , 20)

▶ : 2013.1.1.

**고용촉진지원금 지원
요건 완화**
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
(☎ 02-6902-8474)



,

- 1 650 860 , 6 2
3 4

•

.

<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>

▶ : ,

▶

- ① 6 3
- ②

▶ : 2013.1. (.)

**(예비)사회적기업에
지원하는 인건비 지원
비율 변경**

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
(☎ 02-2110-7172)

■ ()

2013

• 2012

1 90%, 2 80%, 3 70% ,

• 2013

1 90%, 2 70%, 3

50%

2~3년차

하향됩니다.

※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%, 2년차 90%로
2012년도와 동일합니다.

<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>

▶ : ()

2013

▶

①

2012 : 1 90%, 2 80%, 3 70%

2013 : 1 90%, 2 70%, 3 50%

▶ : 2013.1.1.

**장애인 표준사업장의
중증장애인 의무고용
인원 규모에 따라
차등화**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6)



- 2012 11
30% , 50%

-
3 100 , 100 300
, 300

현행	개정
30%	
50%	100 100 15
30%	100 300 100 10 + 5
25%	300 100 5 + 20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대기업
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잡는다

<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>

▶ :

▶

① 100

② 100~300 10%+5 ,

300 5%+20

▶ : 2012.12.

**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
인상 및 산정기준
세분화**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13)

■ 2013

- ‘13 1 626,000 3/4
- , 1/2 ~3/4 1/4 782,500 1/2 939,000 1/2

〈현행: 3단계〉

산정기준	부담금
1/2	(1 59)
1/2	(88 5)
	(95 7)

⇒

〈변경: 4단계〉

산정기준	부담금
3/4	(1 626,000)
1/2~3/4	(782,500)
	(939,000)
	(1,015,740)

*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

■ , 2013

1,015,740
100 199

※ 공공기관 · 300명 이상('11.7.1.) → 200명~299명('12.1.1) → 100명~199명('13.1.1)

☞ (참고) 전자관보(<http://gwanbo.korea.go.kr>)>관보 구분별 보기>고시

<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>

▶ :

▶

① : $\frac{3}{4}$
 , $\frac{1}{2}$ ~ $\frac{3}{4}$
 + $\frac{1}{4}$, $\frac{1}{2}$ +
 $\frac{1}{2}$

②

100

※ 공공기관 · 300명 이상: '11.7.1.부터, 200~299명: '12.1.1부터, 100~199명: '13.1.1부터

▶ : 2013.1.1.

2013

• 1~2 , ,
- 400,000 ,
1 5 .

▶ : ,

▶

① : () .
() 50 ,

② : 40 ,
1 5

③ : 1 ~ 2

▶ : 2013.1.

※ 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연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나, 기업과 학생의 수요에 따라
연중 상시 운영 예정

**특수학교(급)학생에게
일반사업체에서 현장
실습 훈련 지원**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7)

■ 2013

- () 3 3~6

- 1 12,000 , 1 1
17,650 .

- , .

<자원고용형 기업연수제>

- ▶ : ()
- ▶
 - ① : 3,
 - ② : (4)
 - ③ : 3~6
 - ④ : (1 12,000), (1 1
17,650)
- ▶ : 2013.1.

**워크투게더센터 전국
확대 운영**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
(☎ 02-2110-7307)

2012

2

2013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 학생,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

<워크투게더 센터 전국 확대 운영>

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
(☎ 02-2110-7305)

●

100 50 ,
100 50
,
15 30
100 30

<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
및 임금감액을 요건 조정>

▶ :

▶

①

50%

15 30

②

50% 30%

► : 2013.1.()

※ 개정안 입법예고중

최저임금액 인상

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
(☎ 02-2110-7399)

■ 2013. 1. 1. 4,860

• 8 38,880 ,

40 1,015,740 (4,860

×209) , 44 1,098,360

(4,860 ×226) .

• . .

• , .

- , 3

(1) .

10%(4,374) 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내년도 최저임금
시간당 4,860원으로 결정

<최저임금액 인상>

- ▶ : '12.8.1.
- ▶ : 4,860
- ▶ : 2013.1. ~ 12.

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
(☎ 02-2110-7419)

- 2010 12 1 4

$$\begin{array}{r} - 2013 \quad 1 \quad 1 \\ 100 \quad 100 \end{array}$$

- 2013.1.1 1 1 30

※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팜플렛·브로셔

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

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
(☎ 02-6922-0914)

■ 2013

■ , 80%

☞ 「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<http://kras.kosha.or.kr>)」 참조('13. 1. 1. 오픈 예정)

**안전인증 · 자율안전
확인신고 대상 기계 ·
기구 확대 조정**
고용노동부 제조안전예방과
(☎ 02-6922-0935)

■ 2013 3 1

 () 3 * , ,
 , 13 **
 .
 - , .

- * 안전인증: 기계 · 기구등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
- ** 자율안전확인신고: 기계 · 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 · 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

<2013년도 안전인증 ·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확대>

- ▶ :
- ▶
 - ① (8 → 11)
 - ② (3 → 13)
- ▶ : 2013.3.1.

**건설업 시스템비제
재정지원**

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
(☎ 02-6922-0951)

■ 10
60%

- 33%

• 10

-

<2013년도 재정지원사업 개요>

▶ :

▶

① 10

② 1,000 ()

▶ : 2013.1.

**석면해체·제거작업
안전성 평가**
고용노동부 건설산업예방과
(☎ 02-6922-0953)

■ 「 38 4 80 8

- 「
(2012-9 , 2012.1.26.)

- 1,900
15,000
- 2013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석면조사 및 안정성
평가 등에 관한 고시(고시 제2012-9호)

<석면해체·제거업자 안전성평가 평가>

▶ :

▶

①

② ,

▶ : 2013.1.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(☎ 02-2110-7219)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(☎ 02-2110-7219)

☐

●

.

,

19

•

,

,

60

2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최근 제·개정법령

<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>

▶ :

▶

① (18 → 19)

$$\textcircled{2} \quad (60 \rightarrow)$$

► : 2012.12.18

**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
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**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(☎ 02-2110-7223)

■ , .
.
.
(
).

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예술인도 산재
보험 가입할 수 있다

<2013년도 산재보험 가입확대 내용>

- ▶ :
 - ▶
 - ① : 『 』 2 . .
 - ② : () ☞
() ☞ () ☞
() ☞
- *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의 보험사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
기관에 위탁 가능
- ▶ : 2012.11.18.

7. 행정안전(소방·경찰)

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시행

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
(☎ 02-2100-5338)



, 2013

“ ” ()

- : 2013 2 23

- : 2013 2 23 ~ 8 22

(6)

, 150m² 5 * : 2015
2 23

* 5개 업종 : 휴게·일반음식점, 게임제공업, PC방, 복합유통게임제공업

<2013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>

▶ :

▶

① 1 1 (1)

② 2

③ 1 1

▶ : 2013.2.23.

**소방공무원 채용시험
응시연령 상향 및
시험과목 변경**

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
(☎ 02-2100-5316)



40

• 2012 21 30

2013 21 40

•
() 40



• , , , ,
5
- 3 (, ,)
- 2 (, , , , ,
, 2)

<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>

▶
① : 30 → 40

②
• () , , , ,
• () < 3> , ,
< 2> , , , ,
, , 中 2

• ()
28 * 2013.3.22
()
5 , 8 , 16

① 빈집등에 침입, ② 흉기 은닉휴대, ③ 폭행 등 예비, ④ 거짓신고, ⑤ 시체 현장변경 등, 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, ⑦ 관명사칭, ⑧ 마시는 물 사용방해, ⑨ 의식방해, ⑩ 타인의 가족·기계 무단조작, ⑪ 위험한 불씨 사용, ⑫ 거짓 인적사항 사용, ⑬ 자칫세 징수 등, ⑭ 총포 등 조작장난, ⑮ 장난전화 등, ⑯ 지식재산 괴롭힘, ⑰단체가장 강요, ⑱과다대출, ⑲지체채취 불응, ⑳무임 승차 및 무전취식, ㉑물품강제정객행위, ㉒광고물 무단다발, ㉓길행위, ㉔등 물등에 의한 행패, ㉕출판물 부당거래, ㉖거짓광고, ㉗업무방해, ㉘암표매매

(참고) 경찰청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입법예고>제2012-30,31호 경범죄
처벌법 시행령, 규칙 입법예고

▶ :
▶
① ,
② ,
③
▶ : 2013.3.22. (「 」)

8. 보훈 · 국방

국가유공자 보상금 등
인상

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
(☎ 02-2020-5179)

☐

• 2013년 4월 7일 34명 8명
 1~3 456
 ,
 ,
 ,
 42 2
 140 2

☐

2	9	74	5
4		102	4

※ (참고) 국가보훈처 홈페이지>보훈지원>보훈급여금>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안내

<2013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>

▶

▶

① 2012 4%
 - 2%
 ② (15~45% → 20~60%)
 ③ 2 (18 → 20 ,
 12 → 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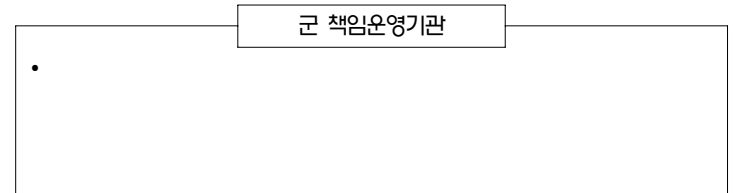
► : 2013.1.1.

✱ ' 12.12.28

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

국방부 경영분석담당관
(☎ 02-748-5380)

■ 2013년 3월 31일 현재, 군 책임운영기관 3개



• 2009년 12월 14일, 25% (1,600명)

• 2013년 4,600명 7,200명
- , 4,000명
3

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 '13년 軍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

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>2011년 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실시

<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확대>

- ▶ : ,
- ▶ ① 3 ,
※ 2012년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(14개)
국군인쇄창, 국군수도병원, 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구소, 육군2보급단, 육군3보급단, 육군항공기정비단, 육군특수무기정비단, 해군보급창, 해군1함대정비대대, 해군2함대정비대대, 공군40보급창, 공군82정비창, 공군83정비창
- ▶ : 2013.1.1.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
(☎ 02-748-5121)

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
(☎ 02-748-5107)

<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>

- ▶ $\mathbb{R}^n$: $\mathbb{R}^n$
- ▶ $\mathbb{R}^n$: $\mathbb{R}^n$
- ▶ $\mathbb{R}^n$: 2013.2. ()

**병 진급 최저복무
기간 조정**
국방부 인력관리과
(☎ 02-748-5135)



• 5 3

• 6 7
3 4

<병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>



(:)

구 분	이등병→일등병	일등병→상등병	상등병→병장	병장→전역
현 행	5	6	7	3 (해군 5, 공군 6)
조 정	3 (-2)	7 (+1)	7	4 (해군 6, 공군 7) (+1)



: 2013.1.1.

**여성군인의 모성보호
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**

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
(☎ 02-748-5173)

-
- 3
- *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
당직근무 면제
- * 제출서류 : 군의관 소견서와 소속지휘관 확인서 ⇨ 군의관 소견서(또는
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소견서), 출생증명서, 소속 지휘관 확인서 중
택일하여 제출

<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>

▶ :

▶
① 3
② / ()
* 제출서류 : 군의관 소견서(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), 출생
증명서, 소속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
▶ : 2013.1

예비군훈련 통지방법
개선

국방부 예비전력과
(☎ 02-748-5245)



<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>

▶ :
①
: 2013.1.1.

**휴일 예비군훈련
확대 시행**

국방부 예비전력과
(☎ 02-748-5245)



• ,

(www.yebigun1.mil.kr/)

<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>

▶ :

▶

①

※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

▶ : 2013.1.

**연대급 통합예비군
훈련장 시험 운영**

국방부 예비전력과
(☎ 02-748-5241)

-
-
- 2013 1
-
-
- , 2013 2015
- 2020
-
-
-

<연대급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 운영>

- ▶ : ,
1
- ▶
 - ① : 56
()
 - ② : 3 (, ,)
 - ③ : 2013 ~2015
- ▶ : 2013.

병 봉급 인상
국방부 복지정책과
(☎ 02-748-6613)

- 2012 15% .
- ,
-

<병 봉급 인상>

- ▶ :
- ▶ : 2012 15% (:)

구 분	계급	2012년	2013년	증액
병 봉급 인상(15%)	이등병	81,500	93,700	12,200
	일등병	88,000	101,200	13,200
	상등병	97,500	112,100	14,600
	병장	108,000	124,200	16,200

- ▶ : 2013.1.1.(,)

군인 처우개선을 위한
수당 인상

국방부 복지정책과
(☎ 02-748-6613)

■ 2013

•

-

-

<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>

▶ :

▶

① 10% (: 15,000 → 16,500)

② 10% (29,700 → 32,700)

③ (→)

▶ : 2013.1.1. (,)

현역병 복무기간 중
건강검진 전면 확대

국방부 보건정책과
(☎ 02-748-6655)

-
- 2012

2013

「

-

3

,

-

.

<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>

▶ : ‘12~’ 16 「

」

▶

① · 3

②

▶ : 2013.1.1.

군 병원 외래진료
서틀 운행 확대

국방부 보건정책과
(☎ 02-748-6648)

■	6
• 2013	
2013	
1	

<군 병원 외래진료 서틀 운행 확대>

▶ :

▶

① : 2012 1 ~ 2013 6
* 노선 : 고양 4개, 홍천 3개

② : 2013 7 ~
* 노선 : 양주 4, 일동 3, 춘천 3, 강릉 2, 해병2사 1개

▶ : 2013.7.1.

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

국방부 보건정책과
(☎ 02-748-6649)



, A
2013

- 2013 1
3 , 2015
2014 , 2015
A 1
- A

<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>

- ▶ : A 2012
- ▶
 - ① 2013 1
A
 - ② 2014
 - ③ 2015
- ▶ : 2013.4.1.

**군 작전차량 유료도로
통행절차 개선**

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
(☎ 02-748-5757)



“

”

.

•

, 2012 10 ‘

,

.

•

,

.

- , 42,000 “ ”

.

<군 작전차량 유료도로 통행절차 개선>



:

“

”

,



①

“

”

,

②

- 2012 3 ~ :

- 2012 7 ~ :

※ 외관상 군 차량으로 식별가능한 범위 협의 완료

- 2012 9 24 : ()

- 2012 10 1 ~ :



: 2012.10.1.

방산원가 계산 시
근로시간 상한 적용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■ 2013 「 」, 「 」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>

- ▶ :
- ▶
 - ① 「 」, 「 」
- ▶ : 2013.2.(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**방산원가 계산 시
생산성경영 인증에
대한 추가이윤 보상**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

- 「
 (Level 4 : 0.5%p /
 Level 5 : 0.75%p / Level 6 : 1%p) .(
 :)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>

- ▶ :
▶
① 「
 (1%p)
▶ 시행일 : 2013.1. (잠정)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**방산원가 계산 시
상용품 적용 등에
대한 인센티브 제공**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

•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원가절감액의 20%로,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.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상용품 적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>

- ▶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원가절감액의 20%로,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.
 - ▶ ① 원가절감액의 20%로,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한다.
 - ▶ : 2013.2.()
- 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**방산원가제도 개선을
통한 중소·중견기업에
대한 지원 확대**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■

·

·

· , 2013
(50%)

· , ‘ , ,
5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<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>

▶

▶

① (50%)

② 「
5

▶ : 2013.2.(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**방산원가제도 개선을
통한 방산수출에 대한
지원 확대**

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
(☎ 02-2079-6445)



•

, 2013

- 50 (5
5 , 1) 2
30% 0.5%p

•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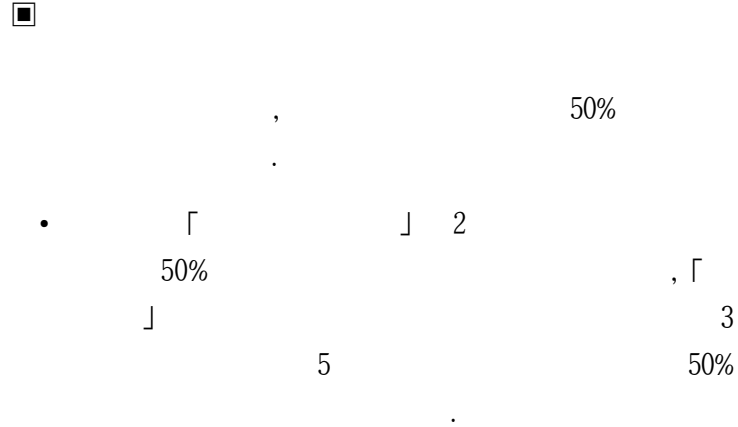
-
(10%)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>

- ▶ :
- ▶
 - ① (0.5%p)
 - ②
- ▶ 시행일 : 2013.1.(잠정)
- 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**중견기업에 대한
기술료 감면 확대**
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
(☎ 02-2079-6454)

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>

▶ :

▶

① 10 2 3
5
50%

▶ : 2013.2.()

※ 행정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일정 등에 따라 시행시기 변동될 수 있음

「군용항공기 비행
안전성 인증에 관한
법률」 개정

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
(☎ 02-2079-6707)

■ 2013 3

(“ ”)

• (,

•

• ,

•

■

'09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

<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>

▶ : '09

▶

① (.

② (

→)

▶ 시행일 : 2013.3.19.

업체 생산 및 정비
능력 확인체계 강화

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
(☎ 02-2079-4123)

■ 2012 12

-
-
-
-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

<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체계 강화>

▶

① , ,

②

③ .

▶

①

②

③ .

④ .

▶ 시행일 : 2012.12.18.

중앙신체검사소 대구 혁신도시 이전

병무청 징병검사과
(☎ 042-481-2918)



2012 12 21

2002

5~6

1

()

<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>

- ▶ : (2005 6)
- ▶
 - ① : 384
 - ②
 - : 7,885㎡, 5,558㎡(1 , 3)
 - : 2011 4 / : 2012 12 17 (: '12.12.21.)
 - ③
 - (→ 1.5km)
 - . ,
- ▶ : 2012.12.21.

장애인 등록자에 대한
병역감면 절차 강화

병무청 장애인검사와
(☎ 042-481-2916)

- • 「
」

,

• , 2013
19

,

<2013년도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제도 변경 사항>

▶ : 19

▶
① 19

▶ : 2012.12.20.

해양경찰순경(전환복무)
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
경찰청 이관
병무청 현역입영과
(☎ 042-481-2738)

■ () .
 , 2013
 .
 .
 .
 ,
 .

☞ (참고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>뉴스·소식>공지/공고>해양경찰 전경 모집 계획 알림

<해양경찰순경 모집·선발 업무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>

▶ : .

▶
① . (→)

▶ : 2013

병무청 현역입영과
(☎ 042-481-2716)



- 2013

* 다만, 의대 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
학력자는 현행과 같이 제외

<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>

- ▶ :
 - ▶
 - ①
 - ▶ : 2013.1.1.

**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
분야 선택기준 조정**

병무청 산업지원과
(☎ 042-481-2771)



200

100

.

•

, 「

」

200

, 「

」

140

2013

<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택기준 조정>

▶

:

▶

①

(200

→ 100)

▶

: 2012.12.20.

**공익법무관 편입지원
시기 및 절차 개선**
병무청 산업지원과
(☎ 042-481-2771)

■ 15
·
2 10 , 2
10
,
·

■ ,
·

<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>

- ▶ :
- ▶
 - ① (2 10
→ 15)
 - ② (→
)
- ▶ : 2012.12.20.

► : 71 ()
(30 →35) ‘ ’

► : 2012.12.20.

국외여행허가자의
국내 장기체재 시
허가 취소

병무청 병역자원과
(☎ 042-481-2965)

- ‘ 3
- ‘ ,
-
- 3

<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자 허가 취소>

- ▶ : ‘
- ▶
- ① ‘ 3
- ▶ : 2012.12.20.

「병역명문가 찾기」
접수 3월에서 2월로
변경
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
(☎ 042-481-2992~3)

■ 「
• 「
, (6) 3
1 2 2013

☞ 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'병역명문가 선양사업'

<2013년도 「병역명문가 찾기」 접수시기 조정>

- ▶ : (6) 「 」
- ▶
- ① 「 」 1 (3 → 2)
- ▶ : 2013.2.

병역명문가, 남성이
없는 경우 군복무
마친 여성 등 포함
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
(☎ 042-481-2992~
-)

- 3
 - ,
 - ,
 -
- 6·25

☞ (참고) 병무청 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'병역명문가 선양사업'

<2013년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>

▶ :

▶ :

①

② , 6·25

▶ : 2013

9. 교육·문화(방송통신)

교육감 소속 교육
전문직원의 지방직화
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
(☎ 02-2100-6243)

■

·

·

(

)

,

- , 2013

·

·

·

**시·도교육청 총액
인건비 전면 시행**

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직과
(☎ 02-2100-6243)

- 2013 1 1 .
- 2 .
- ,
- .
- ,
- ,
- .
- “ ” “ ”
- , ,
- 5 .
- .
- .

<2013년도 총액인건비 시행 주요내용>

- ▶ ()
- ▶ , 5
- ▶ , 1~2 .
- ▶ . 4 3·4
- ▶ , 1 (2) 4
- ▶
- ▶ . (4)

**5세 누리과정을
만 3~4세까지 확대
시행 ('13.3월)**

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
(☎ 02-2100-6556)

- 2013 3 3~4 5
- '13 3
 - '3-5
 - '3-5
 - 2013 3-5
 - 3-5

〈연도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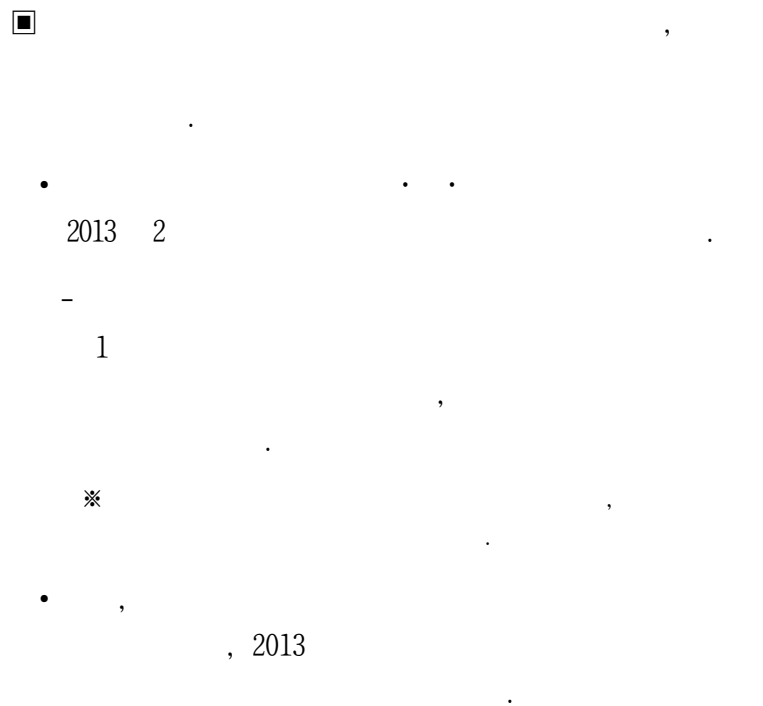
구 분	연령	2012년	2013년
, ()	5	, 20	, 22
	4	70%, 17.7	
	3	70%, 19.7	

※ 국·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('12년) 5.9만원→('13년) 6만원

☞ (참고) 교과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만 3~4세아도 '누리과정(공통과정)' 도입, 유치원교육 100년만에 확 달라진다

저소득층 초·중·고
학생 교육비 지원
절차 개선

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
(☎ 02-2100-6521)



☞ (참고)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
절차 개선

<2013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>

▶ : , ,

▶

① ((父) · (母))

②

▶ : 2013.2.

**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지원 확대**

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
(☎ 02-2100-6415)



- 2012 70%
2013 100%
- , 1 2012 48 (4)
2013 60 (5)
- ,

〈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〉

구 분	2011년	2012년	2013년
	40%	70%	100%
1	36 (3)	48 (4)	60 (5)
	1,758	2,880	3,388

교직 적합한 인재 양성
및 선발을 위해 교원자격
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
제도 개선

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
(☎ 02-2100-6482)

■ , .

• 2013 3 1

“75 ” “80 ” .

- , (13.1) ‘ .

.

〈교원양성과정별 교직 적성·인성 검사 실시 횟수〉

교원양성과정 대상자	전문대학		4년제	교육대학원	
	2년제	3년제 이상		5학기제 이상	4학기제
2013.3.1	1	2	2	2	1
2013 ()		1	1	1	

• 3

2 (,) 2012 ,

(,) 2013 .

- , 1 ‘ ()’

‘ ()’

, 2 ,

.

- ,

2013 9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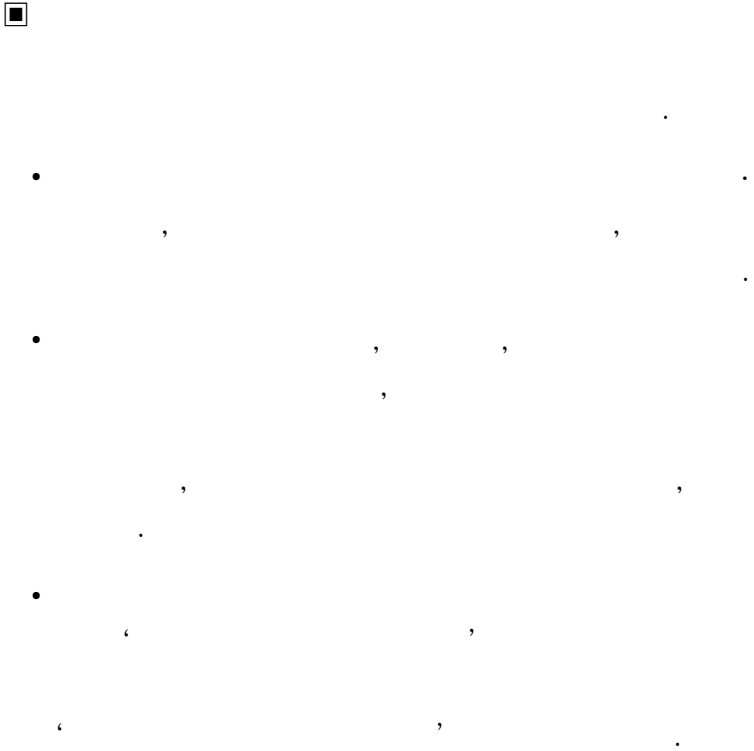
‘ , ,

3 (5) .

☞ (참고)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임용시험 제도 선진화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.

**예술인 복지 증진을
위한 다양한 지원
사업 추진**

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
(☎ 02-3704-9523)



☞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11월 18일, ‘예술인 복지법’ 시행, 법을 통한 복지 지원 첫 출발

<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>

- ▶ :
- ▶
 - ① .
 - ②
 - ③
 - ④
- ▶ : 2013.1.1.

문화예술교육의 질적
성장을 위한 문화예술
교육사 제도 시행

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
(☎ 02-3704-9406)



2013 2 18 .

*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(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5호)
-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(문화예술교육사)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함

- 2005 , 「 」 .
- , () ,
• , ,
- 1 2 ,
「 」 16 2 1
(1) .

☞ (참고)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홈페이지

<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>

- ▶ :
▶ ①
(1 2 ,
·)
② 「
」
▶ : 2013.2.18.

**유상포인트 및 전자
대금지급 관련 콘텐츠
이용자보호 강화**

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
(☎ 02-3704-9311)

- * , 「 」 (‘12.12) . , .
- , .
- , .

*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 등을 구입·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

☞ (참고)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자료>훈령·예규·고시

<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>

- ▶ : .
- *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은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나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어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·시행(‘12.8월)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- ▶
 - ①
 - ②
 - ③
- ▶ : 2013.2.()

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

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
(☎ 02-750-2337)

- 2013 1 TV TV
(HD) .
- 2012 12 31 TV
TV
.
- TV TV
TV *
- (UHF) .
- *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
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,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

〈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신청기한〉

구 분	경남	부산	대전 충남	전북	강원	광주 전남	대구 경북	수도권
	'13.1.4	'13.1.9	'13.1.16	'13.1.23	'13.1.25	'13.1.30	'13.2.6	'13.3.31

※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(미표시 지역은
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)

- TV TV
.
- 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지사항> “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
정부지원 안내”

청각·언어 장애인을
위한 통신중계서비스
‘107 손말이음’ 개통
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
(☎ 02-750-2542)

■ . 2013 1
『107 』 .
•
(, , SMS)
, 2013 1 1
107 .
-
 ,
 .

* 손말과 이음은 각각 수화와 중계를 뜻하는 순 우리말

☞ (참고) 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(<http://www.relaycall.or.kr>)

< 통신중계서비스 번호 통합 및 명칭 변경 >

▶ :

▶

① 107

② (107)

▶ : 2013.1.1.

**700MHz 주파수 대역
에서 동작하는 무선
마이크의 사용 종료**

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
(☎ 02-750-2271)

■ DTV 700MHz
740~752MHz ‘12.12

• , 700MHz
(‘13.10)

• 900MHz

※ 계도기간 종료 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를 이용할 시, 200만원 이하
과태료 부과

■ 2013 700MHz

※ 2013년 이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 수입·생산·판매 시 생산 중지 등
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함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> 700MHz 무선마이크 등 주파수 이용 안내

전자파인체보호기준
제도 강화

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
(☎ 02-750-2244)



•

2013 1 , , ,

•

2013 , ,
(20cm)

☞ 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터>법령정보>고시> 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”

<2013년도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확대 내용>

▶ :

▶

① (→ /)

② (→20cm)

▶ : 2013.1.()

**주요 정보통신서비스
사업자에 대한 정보
보호 인증 강화**

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
(☎ 02-750-2753)



•

, 2013 2

-

100

100

•

,

,

<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제도 시행>

▶

:

▶

①

②

1,000

③

▶

: 2013.2.

10. 농식품·산림

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열악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

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
(☎ 044-201-1553)



“ ” ’13 ~ ’14

•

() *

* 농어촌주택개량사업, 빈집정비, 전원마을조성사업, 농어촌뉴타운사업,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

※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방식등은 '13년 예산 확정 후 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ifaff.go.kr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•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촌정비법

<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주요내용>

- ▶ : ,
- ▶
 - ① ,
- ▶ : 2013.1.1.
 - ※ (참정)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· 운영

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
(☎ 044-201-1574)



5

* 2013년도에 전국 국·공립 대학병원, 의과대학, 연구소 등의 신청을 받아
심사를 통해 지정 예정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
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<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· 운영 >

- ▶ :
- ▶
- ① , ,
5 .
- ▶ : 2013.1.1.

**'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'로
우수기업에 다양한
혜택 제공**
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
(☎ 044-201-1590)

■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란 농어촌지역에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, 인증을 받은 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'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'를 신청하는 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, 인증을 받은 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농어촌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, 인증을 받은 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

• 농어촌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, 인증을 받은 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농어촌사회공헌인증증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농협·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, 정책사업, 물품구매·용역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농어촌을 사랑하세요, 기업이 성장합니다.

<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주요내용>	
▶	농어촌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, 인증을 받은 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▶	① () ② (,), ③ ,
▶	: 2013.1.1.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

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
(☎ 044-201-2419)



- $\bullet$
- $\cdot$
- $\bullet$
- 12
- () , ,
- (,) 16
- .
- (, 12) , (),
- , , , , , , , ,
- (, 16) , , , ,
- (,), ,

* 배달용 돼지고기,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,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

- $$\begin{aligned}
 & \bullet \quad , \\
 & \quad , \\
 & \quad , \\
 & \quad . \\
 - & \quad : (\quad) \quad 1/2 \quad \rightarrow (\quad) \\
 - & \quad : (\quad) \quad \rightarrow (\quad) \\
 - & \quad : (\quad) \quad \rightarrow (\quad) \\
 & (2 \quad)
 \end{aligned}$$

<2013년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>

- ▶ : .
- ▶
 - ①
 - ② (12 → 16)
 - ③ (→ . ,
→)
 - ④
 - () 1/2 → ()
 - () →
 - (2)
- ▶ : 2013.6. ()

※ (참정) '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' 개정절차
진행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

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

농림수산물식품부 검역정책과
(☎ 044-201-2457)

■ 2004

2013 (3)

• 2012 11 , “

”

,

,

1

.

-

,

,

,

.

•

,

.

.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우리나라 삼계탕 수출 개시

<2013년도 대미 삼계탕 수출 개시>

▶ :

▶

①

▶ : 2013 ()

- ※ 미국 내 입법절차(의견수렴, 60일)가 진행중이며,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'13. 2월 말경 최종 확정 공포(30일 이후 시행)
- 의견수렴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안심사 및 의견수렴 재 실시(+150일)

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
대한 농어업 관련 지원
우대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
(☎ 044-201-1535~6)

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

<2013년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 강화>

- ▶ :
- ▶
 - ① ()
- ▶ : 2013.1.23.

**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
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**

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물개발과
(☎ 044-201-2639)



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

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

(65)

2013 1 “

” “ ”

* 개인능력 :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개발·운영, 마을 홍보, 홈페이지 관리, 회계 및 고객관리, 주민교육 등 능력을 갖춘자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시>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운영 요령

<2013년도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내용>

- ▶ : ,
- ▶
- ① ()
- () : 19 65 , : 30 60
- () . 19
- ()
- ▶ : 2013.1.1.

농지은행사업 지원
대상자의 연령제한을
완화

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
(☎ 044-201-1737)

■	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	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
•	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	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
	60	64
	2013	64
-		
•		
()		
	70	
75		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<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>영농규모화사업, 경지회생지원
농지매입사업

<2013년도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>		
▶	:	
▶		
①	(60 → 64)	
②	(70 →	
75)		
▶	: 2013.1.1.	

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
단계적('13~'16년)으로
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
대상 축종을 확대
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정책과
(☎ 044-201-2317)

- (, , ,)
- 4 , ,
3 2013
,
- (, , ,)
2013 ~2016

〈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〉

(: m²)

규모	기업	전업	준전업	소규모
	'13	'14	'15	'16
	1,200	600 ~1,200	300 ~600	50 ~300
	2,000	1,000 ~2,000	500 ~1,000	50 ~500
	2,500	1,400 ~2,500	950 ~1,400	50 ~950
	2,500	1,300 ~2,500	800 ~1,300	50 ~800

-
- * 등록기준 : (현행) 소 300m², 돼지 등 50m² 초과 사육시설 → (변경)
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
- * 등록축종 : (현행) 4종(소·돼지·닭·오리) → (변경) 11종 우제류·가금류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

<2013년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>

- ▶ :
- ▶
- ① (, , ,)
2013 ~2016 (
- 1)
- ②
- ▶ : 2013.2.23.

**축산농가 사료직거래
활성화지원사업 추진**

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경영과
(☎ 044-201-2342~3)



· , .
·
50% , 12~
15% .

*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200억원(3%, 2년 상환)

※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물식품부 홈페이지
(www.mitaff.go.kr)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

<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(신규)>

▶ :

▶
①

- () : 1,200 (3%, 2)

▶ : 2013.1.1.

※ (참정)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
있음

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
(☎ 044-201-2355)

▶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, 한 단계 업그레이드

<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>

▶ : ,

▶

① 2013 3

* 도서·오지·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·군은 제외

▶ : 2013.1.1.

**동물복지축산농장
인증제 확대 시행**

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
(☎ 044-201-2355)



- 2012 3
(‘13), (‘14), (‘15)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

<201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>

- ▶ :
① ‘13
* (‘12) 산란계 → (‘13) 돼지 → (‘14) 육계 → (‘15) 한육우·젖소
▶ : 2013.5.()
※ (잠정) ‘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’ 개정 추진 중으로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

**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
전국단위로 일원화 및
부착대상 확대**
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
(☎ 044-201-2656)



- , .
- , . .

- ,

* 전국단위의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가 2008.1.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,
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.1.1부터는 전면 시행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어선표지판 규격 및
부착요령

<어선표지판 사용 개선>

▶ :

▶

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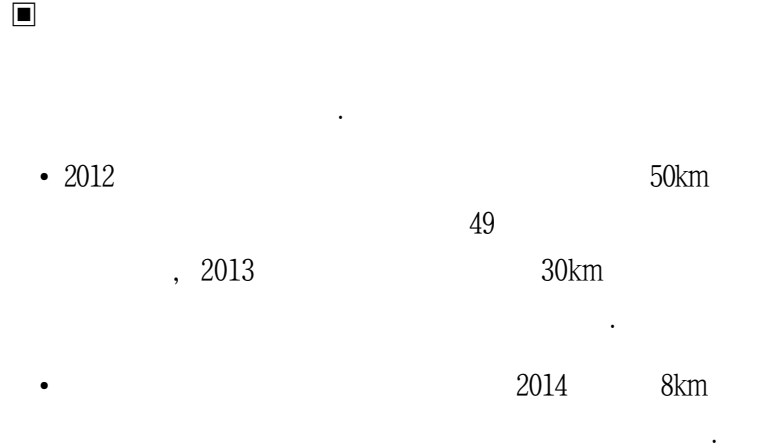
②

- : , ,

▶ : 2013.1.1.

조건불리지역 수산
직불제 시범사업 대상
범위 확대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43)

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공지사항>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사업

<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>

▶ :

▶

①

- 50km → 30km

▶ : 2013.1.1. ()

※ '12.12.28일 현재 국회예산 심의중으로 최종 확정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음

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 개편

농림수산물식품부 수산정책과
(☎ 044-201-2622)



- * 유기수산물 : 항생제·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·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
- * 무항생제수산물 :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
- *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: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(해조류)

☞ (참고) 농림수산물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<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>

▶ :

▶

①

②

▶ : 2013.6.2.

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
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
어촌·어항법 개정
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(☎ 044-201-2632)



•



• 「 」 45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어촌·어항법

<어촌·어항법 개정 항목>	
▶	:
▶	
①	
②	
▶	: 2013.4.23.

수협중앙회의 정상
조합에 대한 부실예방
대책 강화

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
(☎ 044-201-2619)



•

0%

,

-

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

<2013년도 정상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>

- ▶ :
- ▶
 - ①
 - ②
- ▶ : 2013.1.1.

서해5도 백령도
대·소청도 주변어장 확장
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
(☎ 044-201-2657)



5

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어선안전조업규정

<2013년도 서해5도 어장확장 내용>

- ▶ : . .
- ▶
 - ① 연평도 주변어장 조업구역 37km²확장(764km² → 776km²)
 - ② ‘B’ , 43km² (133km² → 176km²)
 - ③ ‘C’ , 36km² (102km² → 138km²)
- ▶ : 2013.1.1.

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

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
(☎ 044-201-1858)

-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
 -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에 따라 변경기준을 완화함
 - 2013년 1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이 3% 미만인 농업경영체는 10%로 변경함
 - 2013년 1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이 10% 이상 20% 미만인 농업경영체는 20%로 변경함
 - 2013년 1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이 20% 이상인 농업경영체는 10%로 변경함
 -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에 따라 변경기준을 완화함
 - 2013년 1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이 3% 미만인 농업경영체는 10%로 변경함
 - 2013년 1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이 10% 이상 20% 미만인 농업경영체는 20%로 변경함
 - 2013년 1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이 20% 이상인 농업경영체는 10%로 변경함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

<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>

- ▶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에 따라 변경기준을 완화함
- ▶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에 따라 변경기준을 완화함
 - ①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이 3% 미만인 농업경영체는 10%로 변경함
 - ②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이 10% 이상 20% 미만인 농업경영체는 20%로 변경함
 - ③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이 20% 이상인 농업경영체는 10%로 변경함
- ▶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액(농가소득)에 따라 변경기준을 완화함

: 2012.12.6.

**친환경 농식품 인증
제도 통합 · 일원화**
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
(☎ 044-201-1872)

■ , , 「 」
「 」
.
.
.
.
(500)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친환경농어업 육성
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<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·일원화>

▶ : .

▶

① 「 」

② (, ,)

③

▶ : 2013.6.2.

비료 생산 · 수입업자
비료 제조 원료 장부
기재 의무화

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
(☎ 044-201-1882)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비료관리법 시행규칙

<비료 생산·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>

▶ :

① (3)

② ()

► : 2013.4.23.

**식물 신품종 육성자
권리 강화**

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
(☎ 044-201-1654)



- ‘5
3 , 2013
6 「 」 ‘7
1 ,

*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: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
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

•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강화

<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>

- ▶ :
- ▶
 - ① 7 1
(: 5 3)
- ▶ : 2013.6.2.

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
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

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
(☎ 044-201-1717)

■

•

• 「

(2013.1.18)

•

- ,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간척지의 농업적 이용
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<「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주요 내용>

▶

▶

① 5

②

③

▶ : 2013.1.18.

농어업 FTA 보완대책
성과 및 투융자 계획을
투명하게 공개

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
(☎ 044-201-1719)

■ · FTA 「FTA 」

* 한·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.1조원 규모의 「한·미 FTA 보완 대책」('08~'17)을 마련 추진

• 2013

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>

▶

①

90

②

5 31

▶

: 2013.1.1.

벌채 · 제재 · 유통
등 목재생산업 등록
제도 도입

산림청 목재생산과
(☎ 042-481-8875)

- 2013 5

☞ (참고)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

<목재생산업 종류 및 분야>

▶ :
▶
① . . .
② ,
▶ : 2013.5.24.

산림교육전문가(숲해설가,
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
지도사) 자격증 발급
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
(☎ 042-481-886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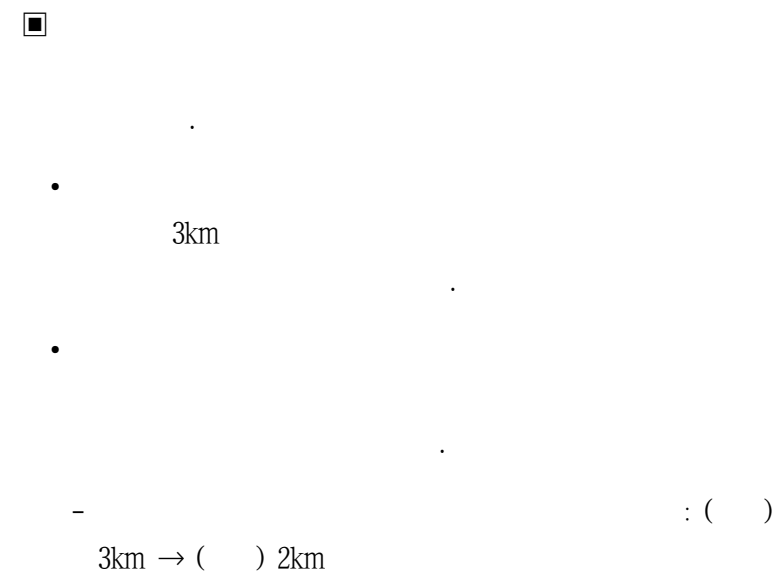
- , , .
- 「 (12.7.26)
-
- (, 70 , 30)
- , .
-

☞ (참고)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

<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양성기관 지정 >

- ▶ :
- ▶
- ① (, ,)
- ② .
- ▶ : 2013

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
및 산림관리 금지구역
지정범위 축소
(3 → 2km)
산림청 산림병해충과
(☎ 042-481-4076)



<2013년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>

▶ :

▶

① (3km → 2k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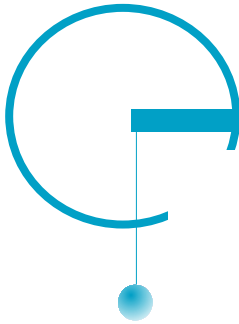
▶ ()

① (3 3)

* '12.12.6부터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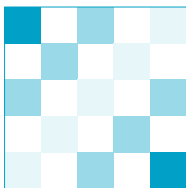
② (7)

* '12.12.9부터 시행



부처별 달라지는 제도

○ 기획재정부	203
○ 교육과학기술부	203
○ 법무부	206
○ 국방부	207
○ 행정안전부	210
○ 문화체육관광부	211
○ 농림수산물부	213
○ 지식경제부	219
○ 환경부	221
○ 보건복지부	223
○ 국토해양부	229
○ 여성가족부	243
○ 고용노동부	245
○ 방송통신위원회	249
○ 국가보훈처	251
○ 금융위원회	251
○ 관세청	252
○ 병무청	253
○ 방위사업청	255
○ 경찰청	258
○ 소방방재청	259
○ 산림청	260
○ 중소기업청	261
○ 특허청	262
○ 식품의약품안전청	262



기획재정부			
			()
' 12.12.28	,	' 13 1	
교육과학기술부			
1.	○	○	· ('12.11)
			(02-2100-6243)
2. ·	○ 2 () ○ ·	○ , , - ○ · ○ ○	('13.1)
			(02-2100-6243)

			()
3. 5 3-4	< . > · 5 : . 5 · 3,4 r : L : < > · 5 : · 3,4 : 70% < > · · 3-5 5.9 (,) · · 5 20 · 4 17.7 · 3 19.7	< . > · 3,4,5 : . 3-5 · 3,4,5 : < > < > - 3-5 6 (,) < > · - 3-5 22	, ('13.3.1.) (02-2100-6556)
4.	o () o	o () ※ 온라인 신청 시, 부(父)·모(母)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o ☞ (참고)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>알림마당> 보도자료>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	· ('13.2.) (02-2100-6521) (02-739-3744)
5.	o : 40% o : 1 36 (3)	o : 70% o : 1 48 (4)	- (02-2100-6415)

			()
6.	○ 100 75	○ - 100 75 , - 100 80 ,	(‘13.3.1.)
	○	○ () ‘ . ,	(02-2100-6482)
	○ : 3 - (1) , - (2) , - (3) ,	○ : 2 (2012) - (1) (), () - (2) , ※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	(‘12.8) (‘13)
	○ : 3 - (1) , - (2) - (3) ,	○ : 2 (2013) - (1) (), () - (2) , ※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	(02-2100-6482)
	< >	○ , (‘13.9.1) 3 (5)	(‘12.8) (‘13.9.1.)
			(02-2100-6482)

법무부				
				()
1.		○ 19 ※ 관련법 :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	○ ※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☞ (참고)법무부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권 관련뉴스>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 미!!법률조력인	('13.6.19)
				(02-2110-3648)
2.		< >	○ . ☞ (참고) 법무부 인권국홈페이지>알림마당>인 권관련뉴스> '진술조력인 제도 도입' 피해 자 국선변호인 지원 전면적 확대'	('13.6.19)
				(02-2110-3852)
3.	1	○	○	('13.7.1.)
			○	(02-2110-3164)
	2	○	○	('13.7.1.)
			○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(02-2110-3164)

				()
4.	1	○	○ :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(‘13.7.1.) (02-2110-3164)
	2	○	○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(‘13.7.1.) (02-2110-3164)
	3	○ 15	○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>민법	(‘13.7.1.) (02-2110-3164)
	국방부			
	1.	○ 14 ※ 국군인쇄창, 국군수도병원, 국군대전병원, 국군의학연 구소, 육군2보급단, 육군3 보급단, 육군항공기정비단, 육군특수무기정비단, 해군 보급창, 해군1함대정비대대, 해군2함대정비대대, 공군 40보급창, 공군82정비창, 공군83정비창	○ , 3 , 3 ☞ 국방부 홈페이지>국방미디어>보도자료 '13년 1월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	(‘11.8.20.) (‘13.1.1.) (02-748-5380)
	2.	< >	○ 3 .	(‘13.6.1.) (02-748-5121)
3.	< >		○ -	(‘13.2.) (02-748-5107)

			()
4.	○ - : 5 - : 6 - : 7 - : 3 (5 , 6)	○ - : 3 (-2) - : 7 (+1) - : 7 - : 4 (+1) (6 , 7)	('13.1.1) (02-748-5135)
5.	< >	○ 3 -	('13.1.) (02-748-5173)
	○ , ,	○ (, ,)	('13.1.) (02-748-5173)
6.	○ :	○ : ,	('13.1.1) (02-748-5245)
7.	○ 1~2 ,	○ ,	('13.1.1) (02-748-5245)

			()
8.	○	○ - 13 ~15 1 * 서울특별시 3개구(광진, 성동, 동대문) 예비군 대상 / 56사단 금곡 예비군 훈련대	- '13. (02-748-5241)
9.	○ 81,500 88,000 97,500 108,000	○ (15%) 93,700 (12,200) 101,200 (13,200) 112,100 (14,200) 124,200 (16,200)	('13.1.1.) (02-748-6613)
10.	○ - * 갑지역 : 15,000원 * 을지역 : 12,000원	- * 갑지역 : 16,500원 * 을지역 : 13,200원	('13.1.1.) (02-748-6613)
	○ () - : 29,700	- : 32,700	('13.1.1.) (02-748-6613)
	○ -	-	('13.1.1.) (02-748-6613)
11.	○	○	('12.9.22.) ('13.1.1.) (02-748-6655)

			()
12.	○ ,	○ 6 (, , , , 2 , ,)	('13.7.1.) (02-748-6648)
13. A	○ ,	○ 13 1 ○ 14 , 15	('13.4.1.) (02-748-6649)
14.	○	○ - :	('12.9.14.) ('12.10.1.) (02-748-5757)

행정안전부

1.	1		10%			10%	('13.1.)
			20%			40%	
						20%	
						40%	
			1 0.03%				
			-	· ()		10%	
			80%				
			10%				
			10%				
		(I)					
			30%	(02-2100-3916)			
	(II)						
	10%						
	1 0.03%						
2		10%	()		5%		
			()		1 0.03%		

				()
2.	1	○ - : 75% - : 50%	○ - 75%	('13.1)
	2		○ 2 50%	
	3	○ 2012 - 140	○ 2015 - 140	(02-2100-3926)
	4	○ 2012 , - () 60㎡. - () 40㎡ 40~60㎡ 50% 60~85㎡ 25%	○ 2015 , - () 60㎡. - () 40㎡ 40~60㎡ 50% 60~85㎡ 25%	
문화체육관광부				
1.		〈 〉	○ ○ ○ ○ 	

			()	
2.	< >	○ , (27 2) - 1 2 , . (16 2) ○ 「 」 (2)	○ (27 2 / '13.2.18) ○ (16 2 16 3 '13.2.18) ○ (2 '13.2.18)	
			(02-3704-9406)	
3.	1	< >	○ , , , ,	('13.2 ())
	2	< >	○ , - , , - , ,	(02-3704-9311)
	3	< >	○ , . . ,	
	4	○ 24%	○ 20%	

농림수산식품부			
			()
1.	○ - .	○ 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 농어촌정비법	(‘13.1.) (044-201-1553)
2.	< >	○ . , 5 .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	(‘13.1) (044-201-1574)
3.	< >	○ () ○ ,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마당>보도자료> 농어촌을 사랑하세요 기업이 성장합니다.	(‘13.1.) (044-201-1590)

			()
4.	○ 98% 2 ○ <12 > · · (), , , , , , , , , ○ - : 1/2 - : - : - : - :	○ : ○ < 12 + 4 > (), , , , , , ○ - : - : - : - : 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	('13.6) (044-201-2419)
5.	○	○ 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알림미당>보도자료>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	/ (044-201-2457)
6.	○ :	○ : 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	('13.1.) (044-201-1535)

			()
7.	○ : 19 65 ○ : 30 60	○ 19 (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사>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운영 요령	(‘13.1.) (‘13.1.) (044-201-1588) (044-201-2639)
8.	○ : 60 ○ : 70	○ 64 ○ : 75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>영농규모화사업, 경지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	(‘13.1.) (044-201-1737)
9.	○ ○ , , 300m², . . 50m²	○ , , (, , ,) ○ , , , 15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고사>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	(‘13.2.) (044-201-2317)

			()
10.	< >	○ (3%, 2) ☞ (참고)농림수산물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 도자료>농가 시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	('13.1.) (044-201-2342)
11.	○ .	○ . . 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자>알림소식>보도자 료>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, 한 단계 업그레이드	('13.1.1.) (044-201-2355)
12.	○ ,	○ ☞() > > >	('13.5.) (044-201-2355)
13.	○ . , . . , ○	○ ○ 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 훈령-예규고시>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 요령	('13.1.1.) (044-201-2656)
14.	○ 50km 49	○ 30km (49) 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농림수산물사업시 행지침사>공지사항>조건불리지역 수산물불 제 사업	. ('13.1.1.) (044-201-2643)

			()
15.	○	○ ○	· (‘13.6.)
		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예규고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	(044-201-2622)
16.	○ · ○	○ ○ · ·	(‘13.4.)
		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어촌·어항법	(044-201-2632)
17.	< >	○	(‘13.1.)
		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	(044-201-2619)
18. 5 , ·	○ 764km ² ○ B 133km ² ○ C 102km ²	○ 776km ² ○ B 176km ² ○ C 138km ² ○	(‘13. 1.)
		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예규고시>어선안전조업규정	(044-201-2657)

			()
19.	○ : 3% ○ : 20% ○ : 3%	○ :10% ○ :10%() ○ :20%(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·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	 , ('12.12.) (044-201-1858)
20.	○ - - -	○ ○ ○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 ('13.6.2) (044-201-1872)
21.	< >	○ ○ ()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비료관리법 시행규칙	 ('13.4.) (044-201-1882)
22.	○ - 5 3	○ - 7 1 ☞ 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>알림소식>보도자료>식물신품종 육성자권리강화	 ('13.6.2.) (044-201-1654)

				()
23.	< >	○ ○ ○	○ ○ ○	('13.1.)
		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		(044-201-1717)
24. FTA	< >	○ FTA * 성과분석(5월말), 투융자계획(9월말)	○ FTA * 성과분석(5월말), 투융자계획(9월말)	('13.1)
		☞ (참고) 농림수산물부>정보광장>법령정보>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		(044-201-1719)
지식경제부				
1.	1	○	○ 11	('12.12.)
				(02-2110-5302)
	2	○	○ 2	('13.3.)
			☞ 법제처>법령통합검색('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' 입력)>시행예정법령 보기	(02-2110-5302)

				()
2.	1	○ · , LMO	○ ○ ·	(13.12.)
	2	○ ·	○ ○ ·	
	3	○	○	(02-2110-5661)
	4	○ (36) · , ,	○ · , , ○ ☞ (참고)국가법령정보센터>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	

				()
3.		○ 20%	○ 25%	(‘12.11.27.)
			☞ (참고)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>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 24201호, 2012.11.27, 일부개정]	(02-2110-5495)
4.		○	○	(‘12.8.24.)
			☞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> 제품안전기본법 [시행2012.8.24], [법률 제11437호, 2012.5.23, 일부개정]	(02-509-7238)
5.		○	○	(‘12.11.6.)
				(02-2195-1115)
환경부				
1.		○ 17 ○ BOD, COD	○ 20 ○ BOD, TOC(Total Organic Carbon)	(‘13.1.)
				(02-2110-6822)
2. 「		< >	○	(‘13.9.)
」			☞ (참고)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해경자료>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포	(02-2110-6960)

				()
3.		○ ,	○ , ,	('13.2.)
			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	(02-2110-6859)
4		○ 2	○	('13.2.)
			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법령/정책>법령정보>입법행정예고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	(02-2110-6859)
5.		○	○ , 2 Tier-3	('13.2.)
			☞ (참고)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홍보>보도자료>농업기계 배출가스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	(02-2110-6809)
6.	1	○ /	○ /	('13. 2)
				(02-2110-6778)
	2	○ (PM10)	○ (PM10)	(('13.2.~) ,
			☞ (참고) 시범사업 이후 초미세먼지(PM2.5) 및 오존으로 점차 확대	(02-2110-6778)
	3	○ , '06) (	○) (	(('13.2.~) ,
				(032-560-7344)

			()	
7.	○	○	('13.1.) (02-2110-6943)	
보건복지부				
1.	①	○ 50%	○ 5%	('13.1.) (02-2023-7426)
	()		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
	②	○ 100%	○ 5%	('13.1.) (02-2023-7426)
	(TS-1)		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
	③	○	○	('13.10.) (02-2023-8756)
			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
	④	○	○	('13.10.) (02-2023-7413)
			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1.6% 인상	

				()
2.	1	Hib	○	○ -

						(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	1	○ ○ 100g		○ ○ 100		('13.1.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	○		○ 150	.	(02-2023-778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	1	○ ' 12 - : 55.1 - : 88.1		○ ' 13 - : 58 - : 92.8		('13.1.1) ('13.1.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	○ -(18~64) 6 -(65) 15 ○ : 5 ○ -(18~64) 0 -(65) 2		○ -(18~64) 8 -(65) 17 ○ : 7 ○ -(18~64) 2 -(65) 4		(02-2023-8672) (02-2023-8654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	1	○ 1		○ 2 ☞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		('13.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	<table><tr><td>【 (18) 】</td><td>【 (18) 】</td></tr><tr><td><table>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6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690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</td><td><table>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86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711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36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61,000원</td></tr></table>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【 (6 ~ 18) 】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('13.1)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<table>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20점~445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220점~31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(02-2023-8204)</td></tr></table>	【 (18) 】	【 (18) 】	<table>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6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690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	활동지원 등급	인정 점수	기본 급여	1등급	380점~445점	860,000원	2등급	320점~379점	690,000원	3등급	260점~319점	520,000원	4등급	220점~259점	350,000원	<table>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86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711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36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61,000원</td></tr></table>	활동지원 등급	인정 점수	기본 급여	1등급	380점~445점	886,000원	2등급	320점~379점	711,000원	3등급	260점~319점	536,000원	4등급	220점~259점	361,000원	【 (6 ~ 18) 】						('13.1)	<table>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20점~445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220점~31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		활동지원 등급	인정 점수	기본 급여	1등급	320점~445점	520,000원	2등급	220점~319점	350,000원				
【 (18) 】	【 (18) 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6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690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	활동지원 등급	인정 점수	기본 급여	1등급	380점~445점	860,000원	2등급	320점~379점	690,000원	3등급	260점~319점	520,000원	4등급	220점~259점	350,000원	<table>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80점~445점</td><td>886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320점~379점</td><td>711,000원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260점~319점</td><td>536,000원</td></tr><tr><td>4등급</td><td>220점~259점</td><td>361,000원</td></tr></table>	활동지원 등급	인정 점수	기본 급여	1등급	380점~445점	886,000원	2등급	320점~379점	711,000원	3등급	260점~319점	536,000원	4등급	220점~259점	36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활동지원 등급	인정 점수	기본 급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등급	380점~445점	86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등급	320점~379점	69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등급	260점~319점	5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등급	220점~259점	3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활동지원 등급	인정 점수	기본 급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등급	380점~445점	88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등급	320점~379점	71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등급	260점~319점	53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등급	220점~259점	36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【 (6 ~ 18) 】						('13.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활동지원 등급</th><th>인정 점수</th><th>기본 급여</th></tr><tr><td>1등급</td><td>320점~445점</td><td>520,000원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220점~319점</td><td>350,000원</td></tr></table>		활동지원 등급	인정 점수	기본 급여	1등급	320점~445점	520,000원	2등급	220점~319점	350,000원					(02-2023-8204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활동지원 등급	인정 점수	기본 급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등급	320점~445점	5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등급	220점~319점	3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		(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	○ ,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추가 급여</th><th>구 분</th><th>추가 급여</th></tr><tr><td>최중증 1인가구</td><td>664,000</td><td>출산 가구</td><td>664,000</td></tr><tr><td>중증 1인가구</td><td>166,000</td><td>학교 생활</td><td>83,000</td></tr><tr><td>중증 장애인 가구</td><td>83,000</td><td>직장 생활</td><td>83,000</td></tr><tr><td>취약 가구</td><td>83,000</td><td>자립 준비</td><td>166,000</td></tr></table>	구 분	추가 급여	구 분	추가 급여	최중증 1인가구	664,000	출산 가구	664,000	중증 1인가구	166,000	학교 생활	83,000	중증 장애인 가구	83,000	직장 생활	83,000	취약 가구	83,000	자립 준비	166,000	○ , <table><tr><th>분 류</th><th>추가급여</th></tr><tr><td>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</td><td>684,000원</td></tr><tr><td>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tr><td>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</td><td>684,000원</td></tr><tr><td>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tr><td>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</td><td>684,000원</td></tr><tr><td>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tr><td>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</td><td>86,000원</td></tr><tr><td>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</td><td>86,000원</td></tr><tr><td>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)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</td><td>171,000원</td></tr></table>	분 류	추가급여	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	684,000원	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	171,000원	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	684,000원	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	171,000원	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	684,000원	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	171,000원	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	86,000원	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	86,000원	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)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	171,000원	(02-2023-8664)
구 분	추가 급여	구 분	추가 급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최중증 1인가구	664,000	출산 가구	66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증 1인가구	166,000	학교 생활	8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증 장애인 가구	83,000	직장 생활	8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취약 가구	83,000	자립 준비	166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 류	추가급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	684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	17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	684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~2급 장애인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	17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	684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	17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	8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	86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가족(실질적 보호자)의 결혼, 출산,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	17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<table><tr><th>분 류</th><th>금액 (원)</th></tr><tr><td>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</td><td>8,300</td></tr><tr><td>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9,300</td></tr><tr><td>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9,300</td></tr></table>	분 류	금액 (원)	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	8,300	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	9,300	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	9,300	○ <table><tr><th>분 류</th><th>금액 (원)</th></tr><tr><td>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</td><td>8,550</td></tr><tr><td>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10,260</td></tr><tr><td>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</td><td>10,260</td></tr></table>	분 류	금액 (원)	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	8,550	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	10,260	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	10,260																									
분 류	금액 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	8,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	9,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	9,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 류	금액 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	8,5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	10,2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	10,2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- : 1 4,000 - : .	○ - : 1 6,000 - : 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		()
8.	-	○ ※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	(‘13.1.27.) (02-2023-8184)
9.	○ 100% (31) - ’12 : 48,111	○ 150% (40) - ’13 : 57,811	- (02-2023-8667)
10.	-	○ - () , , , , , . , ○ - () 30 ○ - () ,	(‘13.4.11.) (02-2023-8640)
11.	○ 1 ~3 : 180 (300) ○ 4 : 100	○ 1 ~4 : 180 (300)	(‘13.1) (02-2023-8483)

			()
12. 3~5 全	○ 5	○ '13 3 3-5	('13.3)
		☞ (참고)보건복지부홈페이지>정책소개>영유아 보육>3-5세 연령별 누리과정	(02-2023-8926)
13.	○ 1,495,550 (4)	○ 3.4% 1,546,399 (4)	('13.1)
	○ 4.17%	○ 1.04%	
	○ 133 108.5 101.5	○ 228 136 116	
	○ 3 ※ 100인 미만, 100인 이상~ 300인 미만, 300인 이상	○ 30 9.5% (5.3%)	(02-2023-8128)
	○ (,)	○	
	○ 30%	○ 30%	
	○ 1 50	○ 1 75	

			()	
국토해양부				
1.	1	○ .	○ - , , ○ 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 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	(13.1.1.) (044-201-3424)
	2	○ . ○	○ (, ,) (, ,) ,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 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	(13.) * (044-201-3424)
	3	○ (100%)	○ · (30%) (70%)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 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제 도입	(13.1.1.) (044-201-3424)

			()
2.		○ () , () , , , , , ○ 2012 3 4 (, , ,)	. ('13.8)
			○ *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
3.		○ (PPLIS) , , 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 정보시스템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	('13.9)
			('12.12.21) (044-201-4651)
4.	①	○ . : 4.0% ○ : 4.2% ○ . : 5.2%	○ . : 3.7% ○ : 3.8% ○ . : 4.3%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			('12.12.21) (044-201-3338)
	②	○ 1 : 2.5% ○ 1 2 : 3.5% ○ 2 : 4.5%	○ 1 : 2.0% ○ 1 2 : 3.0% ○ 2 : 4.0%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			「 」 ('12.12.21) (044-201-3338)

			()
5.	○ . : 3 (3 5) ○ : 5 ○ . : 3 (4)	○ . : () 4 (4 5) ○ : () 5 5 ○ . : () 4 (5)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	(13.1.) (044-201-3338)
6.	○ . - 60㎡ + 5 + 10	○ . - 60㎡ + 7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 (2013.1) (044-201-3338)
7.	○	○ . , , , ,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 (2013.1) (044-201-3338)
8.	○	○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 (2013.1) (044-201-3338)

			()
9.	< >	○	('13.1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	(044-201-3369)
10.	○ 500	○ 500	('13.1)
	○ 4	○ 2)	(044-201-3369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인 자유 크게 확대	
11.	○	○	('13.7)
		☞() >	(044-201-3367)
12.	○	○	('13.7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	(044-201-3367)
13.	○ 2006.9.25 (2009.7.1)	○ 2014.12.31	('12.12.18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	(044-201-3392, 3386)

				()
14.	· PDF	○ (CAD)	○ PDF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 도자료>등산로자전거길 “나만의 맞춤지 도” 만든다.	(’13. 6) (031-210 -2720)
15.	① · ·	○ 30 ○ 10 30 ○	○ ○ 20 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.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	(’13.1 , 4) (044-201-3581)
	② PQ (2 →4)	○ ○ (2)	○ , ○ (2~4) - 20 2 , 20 ~30 3 , 30 4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 전부개정	(’13.4) (044-201-3501)

				()
16.	1	○	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(13.1)
	2	○	○ 70% - 20~50%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(044-201-3581)
17.	1	○	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(13.1)
	2	○	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(044-201-3577)
	3	○	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

			()
18.		< > 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 립 허용	('13) (044-201-3689)
19.		○ 20 20 5	('13.1.1.) (044-201-3691)
20.		○ 25 P 12.5	('13.1.1) (044-201-3691)
21.		< > 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	('13.9.11) (044-201-3691)
22.	1	< > ○ , ,	('13.1)
	2	< > ○ . , ,	(044-201-3751)

			()
23.	○ $\frac{2}{3}$, $\frac{1}{2}$	○ : ① $\frac{2}{3}$, $\frac{1}{2}$, ② $\frac{4}{5}$	('13.7) (044-201-3751)
24.	○	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	('12.12.18.) (044-201-3843)
25.	○	○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상	('13.9.) (044-201-3844)
26.	< >	○ 2013 3.5 , ,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('13.1) (044-201-3851)
27.	○ 4.5 ○ 3.5 ,	○ 4.5 → ○ 3.5 ,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('13.8) (044-201-3851)

			()
28.	< >	○ 2013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('13.1) (044-201-3851)
29.	○	○ - 50%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자료>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	('13.1.1) (044-201-4602)
30.	○ 5 - -	○ 20 (1) - ☞ () > > >	('13.6) (044-201-4177)
31.	1 .	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항만법	('13.6)
	2	○ . - 20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항만법	20 (044-201-4145)
	3	- ○ .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항만법	

				()
32.	1	○ 1	○ 200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('12.12)
	2	○ 30	○ 60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(044-201-4003)
	3	· , , ,	○ 30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4	○ 6	○ 1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5	○ 15	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
			()
33.	-	○ ○ ○ 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('13.6) (044-201-4007)
34.	-	○ (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('13.7) (044-201-4007)
35.	-	○ (1 3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('13.7) (044-201-4007)
36.	-	○ ○ 2012 ('13.1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('13.1) (044-201-4011)

			()												
37.	,	< >	ο ,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 (13.1) (044-201-4018)												
38.	ο 20 , 10 · , 65 (39)	ο . , · ※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 ο 500 ())	4 (13.1.1.) (044-201-4022)												
39.	<table><tr><td>A급</td><td>B급</td><td>C급</td><td>D급 (또는 육상헬기장)</td></tr><tr><td>90M 이상</td><td>90M 미만 40M 이상</td><td>40M 미만 15M 이상</td><td>항공기 기 체 길이 의 1.2배 로서 최 소 15M 이상</td></tr><tr><td>30M 이상</td><td>20M 이상</td><td>15M 이상</td><td>항공기 기 체폭의 1.2 배</td></tr></table>	A급	B급	C급	D급 (또는 육상헬기장)	90M 이상	90M 미만 40M 이상	40M 미만 15M 이상	항공기 기 체 길이 의 1.2배 로서 최 소 15M 이상	30M 이상	20M 이상	15M 이상	항공기 기 체폭의 1.2 배	ο 1.2 15m () > > >	(13.1) (044-201-4349)
A급	B급	C급	D급 (또는 육상헬기장)												
90M 이상	90M 미만 40M 이상	40M 미만 15M 이상	항공기 기 체 길이 의 1.2배 로서 최 소 15M 이상												
30M 이상	20M 이상	15M 이상	항공기 기 체폭의 1.2 배												

				()
40.		○ . (Shoulder)	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 정보>항공법 시행규칙	(13.1) (044-201-4349)
41.	1	○	○ 15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 정보>자연재해대책법	(13.1) (044-201-4350)
	2	○	○ 15 , ,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 정보>자연재해대책법	
42.		○	○ 「 」, 「 」 .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 정보>항공법 시행규칙	(13.2) (044-201-4355)
43.		-	○ (3 100%, 2 50%) ○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당>법령 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	(13.3) (044-201-4377)

			()
44.	○ ('10) - : 3.8mg/L - : 0.074mg/L ○ ('10) - : 7,761.7kg/ - : 203.11kg/	○ : (3.3mg/L), (0.065mg/L) ○ ('17) - : 7,241.3kg/ - (193.00kg/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사회 호 총량관리 시행	'13.7) (044-201-4422)
45.	(6) < > 1 < > 1 1 < > 1 「 5 - - (好氣性)· (嫌氣性) (「 4 2 10)	< > < > < >	[6] ('13.1) (044-201-4427)

여성가족부			
			()
1.	< >	○ . , , , “ ” (’ 12.12.17) ☞ (참고)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	(’12.8) (’12.12.17.) (02-2075-8613, 8617)
2.	. < >	○ . ○ 100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청소년기본법’	(’13.1.1.) (02-2075-8614)
3.	○ 5	○ 7	(’13.1.1) (02-2075-8713)
4.	○ , ,	○ , ,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	(’13.6.19) (02-2075-8766)
5.	○ 19 ○ ○ < >	○ , : (’12.10.25.) 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소식보도해당보도자료> ‘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지원 확대’ ○ ‘ , : ’ 13.6 ○ : ’ 13. 6 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	(/’13.6.19) (02-2075-8768)

☞ (참고)여성가족부 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
도자료>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
통과

고용노동부			
			()
1.	○ 2 (,)	○ 17 (① . , ② , ③ , ④LED , ⑤ , ⑥ , ⑦ , ⑧IT , ⑨ , ⑩ . , ⑪ () . , ⑫ , ⑬ . ⑭ ⑮ ⑯MICE (U)	('13.1) (02-6902-8474)
2.	○ 6 2 ○	○ 3 4 ○	('13.1) (02-6902-8474)
3. ()	○ 1 90%, 2 80%, 3 70%	○ 1 90%, 2 70%, 3 50%	() ('13. 1) (02-2110-7172)
4.	○ 4	○ 5 (,) ☞ (참고) www.work.go.kr/intern/	2013 ('13.1) (02-2110-7178)

			()
5.	○ 15%	○ 100 15% ○ 100 300 10% + 5 ○ 300 5% + 20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고용 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대기업 장 래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배전다	, ('12.12) (02-2110-7306)
6.	○ '12 : 590,000	○ '13 : 626,000 ☞ (참고) 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>관보 구분별 보기>고시(12.14예정)	, ('13.1) (02-2110-7313)
7.	○ 1/2	○ 3/4 ○ 1/2 3/4 + 1/4 ☞ (참고) 전자관보(http://gwanbo.korea.go.kr)>관보 구분별 보기>고시(12.14예정)	, ('13.1) (02-2110-7313)
	○ 1/2 + 1/2	○ 1/2 + 1/2	(02-2110-7313)
8.	○ (200)	○ (100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고 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인 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 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	('13.1) (02-2110-7313)

			()
9.	-	○ 1~2	('13.1) (02-2110-7307)
10.	-	○ ()	('13.1) (02-2110-7310)
11.	-	○ ‘ , , (), , * 서비스내용: 직업설계컨설팅, 직업훈련체험, 직업훈련기관 연계, 구직역량강화, 현장 체험, 학부모설명회, 장애인식개선 등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 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고용노동부, 장애학 생,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	('13.1) (02-2110-7307)
12.	○ 50% ○ 50%	○ 15 30 ○ 30%	('13.1) (02-2110-7305)
13.	○ 4,580	○ 4,860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 용노동뉴스>보도자료>내년도 최저임금액 시 간급 4,860원으로 결정	('13.1.1) (02-2110-7399)
14. 4	○ 50 100	○ 100 100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팜플 렛브로셔	('13.1.1) (02-2110-7420)

[illegible]

			()
19.	○ 2013	○ 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(고시 제2012-9호)	 ('13.1) (02-6922-0953)
20.	○ 18 ○ 60	○ 19 ○ ☞ (참고)고용노동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최근 제개정 법률	 ('12.12.18) (02-2110-7219)
21.	○	○ 2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e-고용노동뉴스>보도자료>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	 ('12.11.18) (02-2110-7223)
방송통신위원회			
1.	TV	○ TV TV ※ 아날로그방송종료 : '12.12.31. 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공지사항> “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”	 ('13.1.1) (02-750-2337)

			()
2.		○ (1599-0042) ○ 107 ○ 『107 』 ☞ (참고)통신중계서비스 홈페이지 (http://www.relaycall.or.kr)	('13.1) (02-750-2542)
3. 700MHz		○ () 740~752MHz 2012 12 31	('13.1) (02-750-2271)
4.	1	○ : ○ / / / 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 타>법령정보>고시> “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 시”	47 2 ('13.1)
	2	○ : ○ : (20 cm) ☞ (참고)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정책/정보센 타>법령정보>고시> 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”	(02-750-2244)
	3	○ : ○ : → , ☞ (참고)국립전자파연구원 홈페이지>자료실>법 령자료실>무선기가> “전자파흡수율 측정기 준 고시”	

			()
5.	o	o	(참고)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 개최,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(13.2) (02-750-2753)
국가보훈처			
1.		- o : 2012 4% - o : 2012 5~15% - o . : 2012 2	(13.1.1.) (02-2020-5179)
※		(참고) 국가보훈처 홈페이지>보훈지원>보훈급여금>201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	
금융위원회			
1.	①	o () (: 100) *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	o : (참고)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실손의료보험 중합개선포럼>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위원회소식>보도자료>보험업감독규정 개정 (참고) 상 동 (참고) 상 동 (참고) 상 동 (: 100) 15 (참고) 상 동
	②	o 10%	o 10% 20% (참고) 상 동
	③	o 3	o (참고) 상 동
	④	o (: 100) * * 보험료 인상폭이 커서 고연령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	o () 15 (참고) 상 동

				()
2.	1	○ 18	○ (1~6) ☞ (참고)금융위원회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등 시행	('12.10.15) (02-2156-9856)
	2	○	○ (-) ☞ (참고)상등	
3. 「 」		○	○ 5%	('13.6.12) (02-2156-9475)
		○ (CP)	○ (CP) * * 실물발행 위험, 유통의 불편함, 투자자 보호 미흡 ※ 현행 기업어음증권(CP)제도는 병행 유지 ☞ (참고)금융위원회 홈페이지>보도자료>전자단기시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	('13.1.15) (02-2156-9874)
관세청				
				()
1.		○ 3	○ 3	('13) (042-481-7906)

병무청			
			()
1.	○ (43 13)	○ (384) - : 2012.12.21. - - ,	('12.12.21.) (042-481-2918)
2.	○	○ 19	('12.12.20) (042-481-2946)
3.	○ .	○ . ☞ (참고)해양경찰청 홈페이지>뉴스소식>공지/공고>해양경찰 전경 모집계획 알림	('13) (042-481-2738) (032-835-2736)
4.	○ (,)	○ ,	('13.1.1.) (042-481-2716)
5.	○ 200 :	○ 100	('12.12.20.) (042-481-2771)

			()
6.	○ - 2 10	○ - 15	('12.12.20.) (042-481-2771)
7. ‘ ’	○ ‘ ’ 28 1	○ ‘ ’ 29 1	('12.12.20) (042-481-2965)
	○ 29 6	○ 30 6	
8.	< >	○ 25 1 , 3	('12.12.20) (042-481-2965)
9. 「 」	○ : 3	○ : 2 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	('13.2) (042-481-2992~3)
10.	○ 3	○ 6 · 25 ☞ (참고)병무청홈페이지>공지사항>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	('13) (042-481-2992~3)

			()
11.	○ - 2 , 1 ※ 동점자, 공동수상자, 입 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 는 공동수상자에 대한 추천기준이 불명확	○ - 2 - 1	('13.1 ,) (042-481-3005)
12.	< >	○	(('13.1.1.) (042-481-3007)
방위사업청			
1.	○	○「 , 「」	('13. 2)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 령>행정규칙 (02-2079-6445)
2.	< >	○「」 (1%p)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 령>행정규칙	('13. 1월) (02-2079-6445)

			()
3.	< >	○ 20% 5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, ('13.2) (02-2079-6445)
4.	○ 2 ○	○ (50%) ○ 「 」 5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, ('13. 2) (02-2079-6445)
5.	○ ○ (: 100%)	○ (0.5%p) ○ (10%)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, ('13.1월) (02-2079-6445)
6.	○ 「 2 」 50%	○ 「 2 」 2 10 2 3 견기업 중 그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액의 50% 감면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('13.2) (02-2079-6454)

				()
7. 「 」	1	· o	o (·) -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 법령	('13.3.19) (02-2079-6707)
	2	o	o ('09.7.31) · · ·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 법령	
	3	o	o 4 5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 법령	
	4	o	o ※ 수수료율 : 판매가의 1/10,000 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 법령	

			()
8.	< >	o	('12.12)
	< >	o	
	o	o , . ,	(02-2079-4123)
	< >	o .	
		☞ (참고)방위사업청홈페이지>방위사업정보>법령>행정규칙	

경찰청

1.	1	o 17 - 28 ※ 통고처분 항목은 즉결심판도 가능하나 즉결심판 항목은 통고처분 불가	o 45 ☞ 통고처분 대상이 되어 적발시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절차 종료	('12.3) (02-3150-1355)
	2	o	o 60 , o 10 , , o 10	
	3	o ※ 철도특별사법경찰이 현장 억류 후 정치역 인근의 지구대로 인계	o	

소방방재청				
				()
1.	1	-	○ - : 2013. 2.23 - : 2013. 2.23 ~ 8.22 ※ 150㎡ 미만 휴게·일반음식점, 게임제공 업 PC방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. 2.23부터	(13.2)
	2	-	○ () - 1 1 ※ 1사고당 사망자수 무한 - 2 - 1 - 1	(02-2100-5338)
2.	1	○ : 21 30 ○ : 21 30 ○ : 20 30 ○ : 20 35	○ : 21 40 ○ : 21 40 ○ : 20 40 ○ : 20 40	(13.1.1) (02-2100-5316)
	2	○ (5) : , , , ,	○ (3) : , , ○ (2) : , , , , ,	
	과목 변경			

산림청			
			()
1.		< >	○ ('13.5.24) (042-481-4204, 8875)
2.	2	< >	○ - , , ('13.) (042-481-4216)
	3	< >	○ - (170), (210), (130) ('12.7.26) (042-481-4216)
3.		○ 3km	○ 2km ☞ (참고) 「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」 시행령 제3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7조 ('12.12) (042-481-4076)

				()
4.		○	○	
				(13.1.1)
		○	○	(042-481-4201)
중소기업청				
1.	1	○ ()	○ ()	(13.1)
		○	○	
		○		
		○		
		○		
	2	○ .	○ .	
	3	< >	○ R&D	(042-481-4453)
	4	○ 1	○ (1 ~9)	
2.		< >	○ : , ,	2013
			○ : , , ,	(13. 1)
			○ , , 10 ()	
			○ : (:	
			1) (80%,	
			20%)	(042-481-4491)
			○ : → .	
			→ → → →	
			→	

특허청			
			()
1.	○	○ 3 30%	(13.1.1.) (042-481-5195)
2.	○ (ATM) ○ (ATM) :	○ ○ (ATM)	- (042-481-5195)
3.	○	○ ○	(13.1) (042-481-8238)
식품의약품안전청			
1.	○ - : (), (), ()	○ - :	(13.1) (043-719-2257)